2009

서울시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 도입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Gender Responsive Budget System in Seoul

배 준 식 · 신 경 희 · 이 세 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서울시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 도입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Gender Responsive Budget System in Seoul

200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

연구책임	배 준 식 •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신 경 희 • 창의시정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이 세 구 • 창의시정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장 윤 희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Ⅰ. 요약

1. 연구의 개요

○연구배경

－성인지적 정책은 정책과정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함. 이는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성인지적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2002년 12월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음.

－「국가재정법」 제26조에 의하면 정부는 2010 회계연도 예산안 제출시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현 지방재정법 상에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가 전체적으로 동 제도가 뿌리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음. 양성평등 실현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그 책무가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도입될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과 이에 선행하여 성별분리통계 및 성별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임. 현재 예산수립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고려 요인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의 개정과 더불어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할 사항임.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한 성인지 예산정책의 수행뿐만

아니라, ‘여행(女幸)’ 프로젝트에서 더 나아가 서울시가 지자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선구적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 연구는 서울시의 여행 프로젝트를 핵심 기반으로 삼아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수행 여건과 한계, 도입 방안, 예산서 작성의 가이드라인 및 작성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서울시 재정운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것임.

○ 연구내용

-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과 정의를 알아보고, 현재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현황을 파악함.
-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고 있는 예산업무로, 이를 적용하기 위해 서울시의 예산구조를 알아보고 이 중 여성관련 예산의 통계를 분석함.
- 서울시 예산구조에 성별영향분석이나 양성평등사업 분석 등 성인지적 관점의 통계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봄.
-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로, 여행 프로젝트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예산 등을 파악함.

○ 연구방법

- 서울시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를 제대로 반영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함.
- 여성관련 통계가 수행된 사업 중 성인지 예산제도를 적용할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성별영향 분석 및 양성평등사업 분석을 실시함.
- 서울시 실·국 중 양성 평등적 고려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이 예산이 성별로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함.

2.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과 추진현황

1) 성인지 예산의 개념

－예산의 지출이 남성과 여성의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편성되고 집행되게 함으로써 그 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말함.

－1984년에 호주에서 처음 도입될 당시에 여성예산(women's budgets)으로 불리던 것이 최근에는 젠더예산(gender budget)으로 불리우며,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지 예산이라 부르고 있음.

－일반적으로 예산은 성 중립적(gender neutral) 또는 몰성적(gender blind)인 것으로 가정하여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고려치 않았으나 성인지 예산제도(gender responsive budget system)는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서 성별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함.

2)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제16조, 제26조, 제34조, 제57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제15조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5조

3) 성인지 예산제도의 발전단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수준

－영연방의 성인지 예산제도 발전단계를 참고로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수준을 다섯 단계로 유형화함.

－1단계는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한 의제화 단계, 2단계는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주로 여성단체가 예산분석을 주도하는 단계, 3단계는 정부 내 제도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시범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적용하는 시범분석단계, 4단계는 정부가 성인지 예산편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집행부서 공무원들이 지침에 근거해 예산안을 작성하고 예산과정에 반영하는 부분 적용단계, 5단계는 부처 간 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예산 편성 시 다양한 부처에서 젠더분석을 수행하고 예산서를 발간하는 전면 실시단계 즉 일반화 단계임.

<그림 1> 성인지 예산제도 발전단계

4) 해외 성인지 예산 추진현황

○국제기구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는 '정부는 평등하고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자원을 배치하고 성평등을 위한 예산분배를 위해서 모든 예산과정에서 젠더 관점을 결합하여야한다'라고 선언하였으며, '각 국의 정부는

공공부문의 지출에서 여성이 어떠한 혜택을 보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할 것'을 요구함.

－2001년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북유럽 각료회의가 공동으로 개최한 브뤼셀 고위급 회의에서는 2015년까지 모든 국가들의 성인지 예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정치적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함. 이 회의에서 성인지 예산을 '예산과정(편성, 집행, 감사, 평가)에 젠더 관점을 결합하고 정부 예산보고서에 젠더 분석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함.

－영연방 사무국(The Commonwealth Secretariat)은 성인지 예산 활동의 국제적 확산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으며, 성인지 예산을 '여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다양한 집단에 대한 예산의 차별적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정부예산 분석으로 규정함.

5) 중앙정부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 경과

○예산안 편성지침 개선(2005~2006)

－2005년도(2006 회계연도)부터 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성인지 예산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통보

○법적근거 마련(2006)

－2006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결산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 마련(2010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부터 시행)

○성인지 예산 교육과정 개설 및 연구(2007)

－성인지 예산 교육과정 신설·운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 시작

○‘2009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범사업 실시(2008)
  －25개 기관(13부, 1처, 11청) 105개 사업
  －양성평등정책사업 52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53개
○시행(2009)

3. 서울시 성인지 예산 수행여건과 한계

1)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사업 현황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생활권단위 자전거친화타운 조성사업, 서울숲 조성 및 운영정책, 서울시 관광종사인력 양성정책, 서울시 환경교육정책, 장애인 고용정책 등 추진
○서울시 실·국·본부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 잠실종합운동장 청소년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 청년일자리사업(행정인턴 프로그램 운영), 자활공동체 소규모 창업지원사업, 주차장 시설개선(시설운영)사업, 강북대형공원 조성공사 등 추진

2)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관계

○평가지표 개발과 시범사업의 유형
  －여성부는 성별영향평가지표를 개발하고 2004년부터 성별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해옴. 2006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어 2008년에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성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성별영향평가 지표
  －여성부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와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있

으며, 각 기관은 이 지표와 지침을 기준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음. 여성부에서 작성된 성별영향평가 지표는 기본체계는 바뀌지 않으나, 개별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매년 약간의 수정이 되고 있음.

○성별영향평가사업의 한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성별분리예산, 또는 여성을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음.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사업을 기획・집행・평가하는, 즉 정책의 전 단계를 주관하는 공무원이 사전평가를 하는 것이 평가 취지에 가장 부합되나, 성별영향평가 시행 초기단계에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도가 낮아 전문가에 의한 사후평가로 시행되어옴.

3) 서울시 예산구조

○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재정법」 제38조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예산편성기준은 동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본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관련 근거규정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2조(예산의 편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 구분)

○사업별 예산구조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정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되며, 서울시는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의 사이에 성과목표가 있음.

－각 정책사업은 과 단위로 구성되는데 정책사업의 하위에는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별로 편성목과 관리목을 편성함. 그리고 가장 아래 항목으로 관리목 하위에 산출근거가 편성되어 있음.

○서울시 여성정책 예산구조

－서울시는 전체 31개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여성정책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은 여성가족정책관임.

－사업예산은 부서・정책・단위・세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의 부서인 여성정책담당관에서는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등의 4개 정책을 담당하고 있음.

4) 성인지 예산 행정기반

○성인지 예산 인식현황

－정책의 수립・집행・평가자인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능력 향상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관점과 직무능력 등 이들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 함양

－교육대상은 25개 자치구의 5~9급 공무원이며,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통해 구청별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을 실시함. 자체교육은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되며, 위탁교육은 구청에서 부담함.

○공무원 교육 현황

－2008년도에 서울시인재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이수한 서울시 공무원은 총 3,801명임. 이 중 여성가족재단에서 교육받은 인원은 전체의 61.0%인 2,320명으로, 이는 서울시 총 자치구 공무원 30,482명의 12.5%에 해당함.

－교육과정은 '성인지정책형성과정', '성별영향평가과정', '성인지예산과정', '성인지통계과정', '여행리더양성과정' 등 6개 과목임.

5)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서울시의 예산구조 상에는 성인지적 관점이 아직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예산도입 역시 고려되지 않은 상황임. 2010년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서 제출에 맞추어 타 지자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성별영향분석사업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도 이를 위한 성별영향분석 사업 및 양성평등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지자체 차원에서 양성평등의 목표가 실현될 것으로 보임. 이는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취지와 같은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간으로 하는 여성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임.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 단위의 실무 행정 추진으로 시민에게 미치는 편익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커질 것임. 국가재정법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줌으로써,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에서 수행할 때 나타나는 행정적인 불편함과 업무수행의 불명확성을 해결할 수 있음.

－여행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여성정책이 실현될 것으로 보임. 여행 프로젝트와 여성정책의 결합으로 중앙정부의 여성정책 기조 하에, 여성관점과 지역적 특수성을 보강한 여성정책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지자체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한다면 구 단위의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비롯하여 지역적, 현실적인 여성정책의 도입으로 지역 여성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방안

1)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기본방향

－국가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 정책에 기초를 두고, 중앙정부에서 시작된 성인지 예산제도가 서울특별시를 거쳐 각 자치구까지 연동

－성인지 예산을 정착시키기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

○추진범위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크게 3가지를 고려해야 함. 첫째,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역시 법적, 제도적인 근거를 갖추어 명문화해야 함. 둘째, 성별분리통계 및 성별영향분석을 통한 여성관련 예산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성인지 예산의 기초가 되는 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의 작성뿐만 아니라, 성별 통계 자료의 구축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및 각 실・국・본부 내의 일부 사업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인재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이는 성인지 예산제도 발전 5단계 중 2단계에서 3단계에 해당하며 현재까지는 여성가족정책관의 주도 하에 소극적으로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여행 프로젝트와 성인지 예산 연계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는 서울시 여성정책 중 성인지 예산이 추구하는 근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으로, 여행 프로젝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중심으로 각종 양성평등 정책 및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함.

○조례 제정

—서울시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성발전기본조례 또는 지방재정법 상에서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 그러나 여성발전조례에 성인지 예산 조례를 추가하여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이를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며,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지방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서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함.

—지방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자치법규로, 지방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 후 지방조례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함.

—그러나 지방재정법은 전국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시만 단독으로 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기반 조성

—성별영향평가 사전 시행 및 성별분리통계 자료 구축, 성인지 성과관리, 공무원 교육 등이 필요함.

○거버넌스 체계

—서울시 실·국·본부가 중심이 되어 전문가집단, 시민사회, 서울시 의회와 네트워크를 갖게 되며, 행정부의 기획재정부 및 여성부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하게 됨.

○운영 체계

—지방재정법 상에 근거를 둘 때,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행은 서울시 예산담당관이 담당함. 예산담당관이 서울시 예산지침에 성인지 예산을 반영

하면 이 지침이 서울시 각 실·국에 하달됨. 이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 관련 업무를 보조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행에 정책적, 제도적인 보완이 가능하게 함.

2) 단계별 시행 방안

○시범부서 선정 방안

－준비 단계에서는 성인지적 접근이 보다 쉬운 부서나 사업을 선정함.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많은 부서나 여행 프로젝트 추진 부서, 또는 여성가족정책관 및 복지국, 문화국과 같이 성인지 예산 작성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 위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상사업 선정 방안

－기존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음. 이는 새로이 통계자료를 구축할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임. 사업이 결정되면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게 됨.

○도입 과정

－서울시 각 실·국에서 실시하는 세부사업 중 성별 구분이 가능한 영역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세부사업, 단위사업별로 성별분리통계 자료를 구축하여, 성별 격차를 확인함. 성별 격차에 대한 확인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의 목표를 설정하여 세부사업별로 이를 반영함.

○연도별 추진 단계

－서울시가 2011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사업 추진 단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1단계 도입기는 2011~2012년의 2년간에 걸친 시범적용 수준 단계로,

초기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자료의 분석능력을 함양하여 제도의 정착에 초점을 맞추는 단계임.

-2단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정착 단계로,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분석역량을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을 일반에까지 확산하여 제도의 정상적인 정착을 이루는 단계임.

-3단계 성숙기는 2018년 이후의 중장기, 고도화 단계로, 성인지적 관점을 예산과정 전체에 도입하여 고도화하고, 고도의 분석능력을 갖추는 단계임.

<그림 2> 서울시 성인지 예산 연도별 추진 단계

○단계별 추진 방안

-1단계에서는 시범적용 수준이므로 제도의 정착에 초점을 맞추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의 확대 및 분석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함.

-2단계에서는 일반화 수준에 도달해 제도가 정상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 전체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분석역량을 제고함.

-3단계는 중장기적으로 성인지 예산이 예산 전 과정에 통합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까지 인식을 확산시키며, 고도의 분석능력을 갖추도록 함.

5. 서울시 성인지 예산 작성 사례

1) 서울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및 가이드라인

○기본 방향

－현재 서울시에는 일반예산이 성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판단할 근거 자료가 부족하므로, 사전에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서울시의 현 상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일반예산의 사전적 성별영향평가의 반영, 성인지 성과관리,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 등을 포함해야 함.

○작성 양식

－서울시 성인지 예산서의 주요 내용은 예산편성의 배경, 성인지 예산 운용의 목표, 성인지 예산의 개요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할 것임.

－일반적으로 성인지 예산서의 유형은 크게 양적 집계, 부처별 분석, 부문간 분석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정부 예산서와 동일한 유형일 필요는 없으나 국가 재정운용과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예산서도 어느 정도 일관된 형식적 요건을 따라야 함.

○작성 양식 사례

－서울시 성인지 예산서는 사업별, 실·국별로 작성되며, 크게 성인지 정책현황, 사업총괄표, 성인지 예산 사업 설명서 등을 포함하고 있음.

－예산서의 주요 내용은 성인지 정책현황, 양성평등 예산 사업, 일반예산 분석, 성인지 예산사업 설명서 등임.

<표 1>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 기본

OO실

I. 성인지 정책 현황
1. 성인지 정책 목표 및 재정운용 방향
2. 성인지 정책 추진 현황 및 재정운용 추이

구 분	2009예산(A)	2010예산(B)	증감(B-A)	증감률(%)	세부사업 개수
양성평등정책사업	억원	억원			
성별영향분석사업	억원	억원			
OO실 예산	억원	억원			

II. 사업총괄표

III. 성인지 예산 사업 설명서
1. 양성평등예산사업(사업목적, 정책대상, 사업내용, 추진실적 및 성과, 세부내역, 기대효과)
2. 성별영향분석사업(사업목적, 정책대상, 사업내용, 추진실적 및 성과, 세부내역, 기대효과, 성별영향분석)
   1) 성별 수혜 분석(예산사업에 대한 성별통계를 생산하는 경우는 성별통계 제시, 아니면 사유 기재)
   2) 수혜의 성별 편차 원인 분석(수혜의 성별 편차를 가져온 제도상의 원인, 현실적 여건 구체적 기술)
   3) 수혜의 성별 편차 해결을 위한 대안(예산 및 제도개선 반영 사항)
   4) 성평등 목표 설정(1)~3)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치(비율, 만족도) 설정, 아니면 사유 기재)

2) 서울시 성인지 예산서 적용 사례

○사업별 성인지 예산서 적용 사례

－서울시 2008년 사업 중 양성평등예산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할 때, 사업 목록과 사업설명 자료가 중심이 됨. 사업 목록은 세부사업 단위로 기재하며, 세부사업별 사업설명 자료에는 사업목적 및 사업개요,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사업내용을 기재함.

<표 2> 서울시 사업별 성인지 예산서 : 양성평등예산사업

I. 양성평등예산사업

1. 목록

(단위 : 천원)

회계	세부사업	2007 예산	2008 예산(A)	2009 예산요구	2009 예산검토(B)	증감 (B-A)	%
일반회계	여성장애인프로그램 운영지원	600,000	600,000	600,000	600,000	0	0
일반회계	해산급여	0	262,500	262,500	262,500	0	
…	…	…	…	…	…	…	…
일반회계	아동복지센터운영및 아동보호전문기관확대		619,800	619,800	619,800	0	16,300

2. 사업 설명자료

1. 세부사업명: 여성장애인프로그램 운영지원

부서(복지국 장애인복지과)-정책(장애인 자립생활기반 조성)-성과(장애인 취업지원 및 단체지원으로 사회참여기회 제공)-단위(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 사업목적: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고를 극복하여 여성장애인이 사회 일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함.

□ 사업개요: 서울등록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 중심기업협회(서울시지부)를 통해 장애인 취업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일반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확대

□ 사업내용: 장애인 직업능력과 희망하는 직종에 대한 통합적 정보를 제공하고 적합한 직업재활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일반교육 · 훈련기관의 장애인 이용방안 확대

2. 세부사업명: 해산급여

부서(복지국 장애인복지과)-정책(장애인 자립생활기반 조성)-성과(장애인 취업지원 및 단체지원으로 사회참여기회 제공)-단위(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 사업목적:

□ 사업개요: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사업내용:

Ⅱ. 정책건의

1.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을 위한 결론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상 법적, 제도적 근거를 갖춘 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할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음.

○또한 기본 여건으로, 이 제도의 정상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성별분리통계 및 성별영향분석을 통한 사전 예산 분석이 필수적임.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이전에 사전적으로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분석 사업 등이 이루어져야 함.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서 상에 성인지적 관점을 추가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경우 예산은 서울시 예산담당관이 주도하고 있음. 따라서 성인지 예산제도 역시 예산담당관에서 주도권을 갖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임.

○추진체계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서의 적용은 개별 세부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서울시 실·국·본부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 주도형의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지표 및 작성양식,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함.

－이때 담당 공무원들은 실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통계 분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서울시는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에 시간과 비용을 충분히 투자하여야 할 것임.

○성인지 예산제도는 처음부터 전 부서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부서별, 사업별로 부분적용을 거쳐 전면적용으로 차차 확대해나가야 함.

－이를 위해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많은 부서, 여행 프로젝트 추진 부서, 또는 여성가족정책관 및 복지국, 문화국과 같이 성인지 예산 작성 호응

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 위주로 시범부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 단계를 거쳐 정착화시켜나가야 함.

○ 연도별로는 중앙정부가 2010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기에, 서울시는 2011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한다고 가정할 수 있음.

－2011~2012년의 2년간은 도입기로, 성인지 예산의 인식을 확대하고, 성인지적 관점의 자료 분석 능력을 갖추는 시범적용 수준 단계로 볼 수 있음.

－2013~2017년의 5년간은 정착단계로, 분석역량을 제고하고 성인지 예산제도를 전 부서로 확산시켜 제도의 정착을 이루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2018년 이후는 성숙기로, 성인지적 관점을 예산과정 전체에 도입하여 고도화하고, 고도의 분석능력을 갖추어나가야 함.

2.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단계적 접근 방안

○ 1단계

－성인지 예산서는 서울시 일부 실・국에서 작성하며, 여성정책기본계획(안) 및 성별영향평가 수행 기관 중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선정함.

○ 2단계

－1단계 이후 2~3년 후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부서를 점차 확대하되, 제도의 정착 여부를 판단하여 서울시 전체 실·국에서 작성하도록 함.

○ 3단계

－성인지 예산 제도화 수준과 이를 넘어선 성과관리 단계에 해당하는 시기로 중장기적 과제에 해당함. 서울시 전체 실・국이 대상이 되며 예산편성－심의－집행－평가가 성 주류화 관점에서 통합되어야 함.

<표 3>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단계적 시행 방안

시 기		작성기관 선정	대상사업 선정	분석수준
1단계	2011	일부 실·국	<1안> 실、국별 1개 사업 <2안> 대상사업 자체결정(5~10개)	낮은 수준의 분석~ 높은 수준의 분석 부분 병행
2단계	2~3년 후	<1안>작성부서 확대 <2안>서울시 전체 실·국	대상사업의 지속적 확대	낮은 수준의 분석~ 높은 수준의 분석 부분 병행
3단계	중장기 과제	서울시 전체 실·국	대부분의 사업	고도화된 분석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5

1. 연구 내용 ····· 5

2. 연구 방법 ····· 6

제2장 성인지 예산제도 개념과 추진현황 ····· 11

제1절 성인지 예산의 개념과 제도화 ····· 11

1. 성인지 예산의 의의 ····· 11

2. 법적 근거 ····· 13

3. 성인지 예산제도의 발전단계 ····· 15

제2절 성인지 예산의 추진현황 ····· 17

1. 국제기구 ····· 17

2. 성인지 예산 적용 모델과 추진방식 ····· 20

3. 국내외 현황 ····· 26

4. 시사점 ····· 34

제3장서울시 성인지 예산 수행여건과 한계 ····· 39

제1절 성인지 예산 관련 제도와 사업 ····· 39

1.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사업 현황 ····· 39

2.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 51

제2절 성인지 예산 행정기반 ·····63
1. 서울시 예산구조 ·····63
2. 서울시 성인지 예산 수행을 위한 행정기반 ·····74
제3절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76
1.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76
2.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78

제4장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방안 ·····83
제1절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83
1.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기본방향 ·····83
2.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전략 ·····85
3.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체계 ·····89
제2절 단계별 시행 방안 ·····92
1. 성인지 예산서 도입 준비 ·····92
2.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른 성인지 예산 ·····94

제5장 서울시 성인지 예산 작성 사례 ·····99
제1절 서울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및 가이드라인 ·····99
1. 기본 방향 ·····99
2. 작성 양식 ·····100
제2절 서울시 성인지 예산서 적용 사례 ·····104
1. 성인지 예산제도 분석 사업 ·····104
2. 사업별 성인지 예산서 적용 사례 ·····109

참고문헌 ·····115
영문요약 ·····119

표 목 차

〈표 2-1〉 성인지 예산의 정의 ·····12
〈표 2-2〉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13
〈표 2-3〉 성인지 예산 거버넌스 분석 모형 ·····24
〈표 2-4〉 성인지 예산제도의 유형별 시행주체 ·····25
〈표 2-5〉 호주 예산안 부속서류 ·····28
〈표 2-6〉 호주 여성예산서 구조(1991~1992) ·····28
〈표 2-7〉 스웨덴 성인지 예산제도 발전 과정 ·····30
〈표 2-8〉 인도 국가발전기본계획법 상 성인지 예산제도 발전 과정 ·····32
〈표 3-1〉 여성부의 연도별 성별영향평가지표 구성(2005~2009) ·····46
〈표 3-2〉 2009년 여성부 성별영향평가 지표별 점검 포인트 ·····47
〈표 3-3〉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사업의 예산 관련 지표의 평가결과 ·····49
〈표 3-4〉 여행 프로젝트 주요 사업 ·····55
〈표 3-5〉 돌보는 서울 세부 사업(2009) ·····56
〈표 3-6〉 일있는 서울 세부 사업 ·····57
〈표 3-7〉 넉넉한 서울 세부 사업 ·····57
〈표 3-8〉 안전한 서울 세부 사업 ·····58
〈표 3-9〉 편리한 서울 세부 사업 ·····59
〈표 3-10〉 서울시 예산편성기준 구성 ·····64
〈표 3-11〉 예산편성 관련 업무체계도 ·····65
〈표 3-12〉 서울시 사업구조 ·····66
〈표 3-13〉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예산 사례 ·····70
〈표 3-14〉 서울시 복지국 여성정책예산 사례 ·····71
〈표 3-15〉 서울시 문화국 여성정책예산 사례 ·····71
〈표 3-16〉 복지국 예산사업 체계 ·····72

〈표 3-17〉 복지국 목표달성 지표 ·····73
〈표 3-18〉 성인지 예산제도 교육 수요(2009) ·····75
〈표 4-1〉 서울시 성인지 예산조례 규정 사례 ·····87
〈표 4-2〉 단계별 도입 환경 조성 방안 ·····94
〈표 4-3〉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단계별 접근모형 ·····96
〈표 5-1〉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 매뉴얼 내용 ·····100
〈표 5-2〉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 기본 ·····101
〈표 5-3〉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 정책현황 ·····102
〈표 5-4〉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 양성평등 예산사업 ·····103
〈표 5-5〉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 일반예산 분석 ·····104
〈표 5-6〉 서울특별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연령별 이용자 현황 ·····107
〈표 5-7〉 서울특별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성별 이용자 현황 ·····107
〈표 5-8〉 서울시 사업별 성인지 예산서 : 양성평등예산사업 ·····110

그림목차

〈그림 2-1〉 성인지 예산제도 발전단계 ····16
〈그림 3-1〉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개요 ····52
〈그림 3-2〉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추진체계 ····53
〈그림 3-3〉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기대효과 ····54
〈그림 3-4〉 여행시설 인증 추진 절차 ····61
〈그림 3-5〉 하향식 사업구조와 상향식 사업구조 ····68
〈그림 3-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사업예산명세서 체계 ····70
〈그림 3-7〉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76
〈그림 3-8〉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현황 ····78
〈그림 4-1〉 주체 간 파트너십 관계 ····90
〈그림 4-2〉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체계 ····91
〈그림 4-3〉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 ····93
〈그림 4-4〉 성인지 예산 도입 과정 ····93
〈그림 4-5〉 서울시 성인지 예산 연도별 추진 단계 ····95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성평등(gender equality)과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국가별 정치·경제·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공통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글로벌사회의 국가경쟁력은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에 달렸으며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여성의 직접 경제활동참가율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전반의 젠더패러다임 구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성인지적 정책은 정책과정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함. 이는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성인지적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2002년 12월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음.

국가재정법 제26조에 의하면 정부는 2010 회계연도 예산안 제출 시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제도는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성별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함. 현 지방재정법 상에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가 전체적으로 이 제도가 뿌리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음. 즉, 양성평등 실현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그 책무가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도입될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성인지예산조례' 제정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서울시 차원에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정책 또는 사업의 대상자를 남녀로 구분하는 성별분리통계 생산, 정책 결정・집행・평가 시 남녀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양적・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의 강화,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적 도입을 위한 기관장의 성인지적 리더십 확보가 필요함.

2. 연구 목적

성인지 예산제도는 서울시의 '여행(女幸)'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서, 서울시 재정운용에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가 양성평등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

즉, 현재는 서울시의 여성정책과 예산 수립 및 집행이 서로 유리되어 양성평등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으나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모든 예산사업에 성별분리통계를 적용하여 가격, 물량 등에 성별 영향을 평가・적용하게 됨. 예를 들어, 일자리창출 예산과 같은 경우 현재 인원 및 인건비 등과 같은 고려 요소 외에 인원 중 남녀의 비율, 남녀 인건비의 차이 등을 고려함으로써 양성 불평등의 요인을 가능한 배제하자는 취지임.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이 제도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시를 위해서는 우선 성별분리통계가 작성되어야 하고 예산수립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한 성인지 예산정책의 수행뿐만 아니라, 여행 프로젝트에서 더 나아가 지자체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선구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서울시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과 정의를 알아보고, 현재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외 사례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를 파악하여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것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를 알아봄. 해외 사례 연구는 서울시의 효과적 제도운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대한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성인지 예산제도는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고 있는 예산업무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예산구조를 알아보고 이 중 여성관련 예산의 통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서울시 예산구조에 성별영향분석이나 양성평등사업 분석 등 성인지적 관점의 통계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봄.

성별로 구분된 통계분석은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요소이며, 향후 지방재정법 상 성인지 예산의 정의, 실시 의무,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구・개발, 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 작성 등의 조항을 신설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현재 국가재정법 상 대통령령에서는 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에 대한 기초적 사항만 규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구체적 내용 및 실시방법, 절차 등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함.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지방조례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하며, 이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조례와 단순 여성관련 복지정책 조례를 구분하여 제정되어야 함.

서울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로, 서울시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다면 여행 프로젝트와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 프로젝트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예산 등을 파악해야 함.

여행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분적 정책수립과 실시도 중요하지만 재정사업을 포함하여 서울시의 전반적 정책에 있어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하여 이를 구현할 수 있음. 이는 서울시 예산의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및 역량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연구 방법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은 국가정책만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협조해야 할 중요 사안임.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가 성인지 예산을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첫째,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알아봄. 서울시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를 제대로 반영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함.

둘째,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을 토대로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분석함. 분석 방법은 여성관련 통계가 수행된 사업 중 성인지 예산제도를 적용할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성별영향 분석 및 양성평등사업 분석을 실시함.

현재 서울시 예산의 목표체계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으로 분류하여 세부사업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서울시 실·국사업 중 양성 평등적 고려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이 예산이 성별로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셋째, 서울시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할 경우,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서울시 조례에 포함될 지침 및 내용을 제시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예산제도는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그 실효성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우선 이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제2장 성인지 예산제도 개념과 추진현황

제1절 성인지 예산의 개념과 제도화
제2절 성인지 예산의 추진현황

제 2 장 성인지 예산제도 개념과 추진현황

제1절 성인지 예산의 개념과 제도화

1. 성인지 예산의 의의

1) 성인지 예산의 개념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지출이 남성과 여성의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편성되고 집행되게 함으로써 그 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말함. 성인지 예산은 1984년에 호주에서 처음 도입될 당시에 여성예산(women's budgets)으로 불리던 것이 최근에는 젠더예산(gender budget)으로 불리우며,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지 예산이라 부르고 있음.

일반적으로 재정운용(예산)은 성 중립적(gender neutral) 또는 몰성적(gender blind)인 것으로 가정하여 남성과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상황, 수요의 차이를 고려치 않았으나, 성인지 예산제도(gender responsive budget system)는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서 성별 영향을 고려함.

2) 성인지 예산의 정의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여성과 남성의 다양한 집단에 대한 예산의 차별적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정부예산 분석임. 또한, 예산과정에 있어 성 주류화를 목표로 예산에 대한 성별영향평가(gender-based assessment)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함. 즉 모든 수준의 예산과정에서 젠더 관점을 결합하고 성평등을 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구조화하는 것임.

국가 예산은 양성평등사업예산과 일반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예산을 합하여 국가 총예산이 됨. 양성평등사업예산이란 성평등을 1차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여성정책 기본계획 관련 사업에 쓰이는 예산을 말함. 양성평등사업의 예로는 양성평등 교육 및 여성능력 증진, 여성 장애인 교육, 성폭력 범죄자 치료 및 재활, 남녀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이 있음. 그 외에 일반사업예산이란 성별영향분석 대상사업으로, 자체 사업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성평등 목표와 무관해 보이는 사업에 쓰이는 예산을 말함. 성별영향분석 대상사업의 예로는 지방대학생 학비 지원, 공공기관인턴제, 노인일자리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음.

양성평등사업예산은 국가 전체 및 부처별로 집계하여 전체 예산 또는 각 부처 예산 중 성평등 사업의 비중을 분석하는 것이며, 성별영향분석사업은 사업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젠더 분석을 수행하는 것으로 성별영향분석 대상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표 2-1> 성인지 예산의 정의

구 분	내 용
성인지 예산제도	예산이 의도하지 않게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
성인지 예산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정법 26조)
양성평등사업	양성평등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업
성별영향분석사업	양성평등사업을 제외한 일반예산사업(기금제외) 중 성별수혜자 분석이 가능한 사업

성인지 예산은 여성들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거나 양성평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예산을 증가시킬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며 주어진 재원 하에 양성평등정책사업의 합리적 규모 책정과 재원배분을 통해 최대한의 성평등 효과를 이루려는 것임.

2. 법적 근거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2>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구 분	내 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9.5.27 법률 제9712호 시행일 2010.1.1]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성인지 예산서 제3장 결산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삭제<2008.12.31>

<표 계속>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구 분	내 용
국가재정법	부칙 <제8050호, 2006.10.4> 제5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및 제34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제출,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및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제출은 각각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3.25 대통령령 제21360호]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범위 <개정 2009.3.25>) ① 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2.29, 2009.3.25>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규모와 기대효과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신설 2009.3.25>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0. 성인지 예산서
국가회계법	[제정 2009.3.25 대통령령 제21361호] 제3장 결산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7.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정 2009.3.25 대통령령 제21361호]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성인지 예산제도의 발전단계

2005년 '영연방의 성인지 예산－성과와 도전－Gender Responsive Budgets in the Commonwealth' 보고서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발전단계를 다음 4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첫 번째는 성인지 예산 관련 워크숍, 사전적 욕구평가 등이 시행되는 여건조성단계(environment building)이며, 두 번째는 성인지 예산 관련 도구와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해보는 단계(start up), 세 번째는 관련 정책 입안자들이 성인지 예산을 시행해보는 실천단계(analysis to action), 네 번째는 예산과정의 일부로 통합되어 자원분배의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와 제도화의 단계(impact and institutionalization)임. 보고서에 의하면 영연방 국가들의 2/3가 첫 번째 단계인 여건조성단계에 있으며, 영연방사무국의 지원활동에도 불구하고 제도화의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하고 있음(김영옥 외, 성인지 예산분석기법 개발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연구, 20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영연방의 성인지 예산제도 발전단계를 참고로 하여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수준을 다음 다섯 단계로 유형화하고 있음. 물론 제도화의 수준이 곧 성인지 예산의 발전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도화 과정이 단계별로 단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1단계는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한 의제화 단계로, 다양한 행위자들이 토론과 정보교류를 통해 성인지 예산의 필요와 의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는 단계임. 저개발국가에서는 국제기구나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경향이 있음.

2단계는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주로 여성단체가 예산분석을 주도하는 단계로, 1단계와 달리 체계적인 예산 분석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정부에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도록 압력을 행사함. 대부분 집행된 예산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 분석을 하므로 사후적 속성을 가짐.

3단계는 정부 내 제도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시범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적용하는 시범분석단계로, 정부는 성인지 예산이 가능하도록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방법론과 도구 개발 등의 사업을 함.

4단계는 정부가 성인지 예산편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집행부서 공무원들이 지침에 근거해 예산안을 작성하고 예산과정에 반영하는 부분 적용단계임. 전면 실시를 하기보다는 특정부서를 지정하여 실시하게 됨.

5단계는 부처 간 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예산 편성 시 다양한 부처에서 젠더분석을 수행하고 예산서를 발간하는 전면 실시단계, 즉 일반화 단계임.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인도, 필리핀 등의 국가들이 5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림 2-1> 성인지 예산제도 발전단계

제2절 성인지 예산의 추진현황

1. 국제기구

1) 북경세계여성대회

1995년 9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 189개국 정부 대표, 유엔관련 기구, 민간단체 대표 등 5만여 명이 참가하여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행동강령을 채택함. 이 대회 참가자들은 2000년까지 남녀평등이 실현되도록 여성과 빈곤문제를 포함한 12개 주요 관심 분야에 관한 전략 목표와 행동 방안을 제시했으며 여성 자신이 경제, 정치, 문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적,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함.

유엔의 여성정책은 여성지위위원회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유엔은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정하고 유엔여성 10년을 선포한 이래 이미 3차례의 세계여성대회를 개최함. 유엔은 대륙별로 북경여성행동강령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회의를 2004년에 개최하였으며, 2005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차원에서 북경여성행동강령 이행을 점검하는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함. 이 회의에서 그 당시 여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 결의 사항을 채택함. 북경행동강령은 지난 20년간 여성에 의해 얻어진 성과와 주요 관심분야의 요지를 함축한 것으로 보편적인 인권 정신에 기초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제로 남녀평등 실현을 강조하고 있음.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를 통해 국제기구와 국가별 성인지 예산활동을 위한 포괄적 합의가 처음으로 도출됨.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는 '정부는 평등하고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자원을 배치하고 성평등을 위한 예산분배를 위해서 모든 예산과정에서 젠더 관점을 결합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였으며, '각 국의 정부는 공공부문의 지출에서 여성이 어떠한 혜택을 보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할 것'을 요구함(행동강령 346조). 그리고 원조기구들은 공적원조의 20%, 사회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예산의 20%를 젠더 관점에서 고려할 것'을 요구함(행동강령 358조). 북경세계여성대회 이후 성인지 예산은 국제적으로 women's budget 대신 gender-responsive budgeting(GRB)이란 용어로 통용되고 있음.

2) 브뤼셀 고위급회의

2001년 UNIFEM, OECD, 북유럽 각료회의[1]가 공동으로 개최한 브뤼셀 고위급 회의(Strengthening Economic and Financial Governance through Gender Responsive Budgeting)에서는 2015년까지 모든 국가들의 성인지 예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정치적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함. 이 회의에서는 성인지 예산을 '정부정책이 여성과 남성, 소년과 소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여성과 남성의 욕구와 우선성이 동등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예산과정(편성, 집행, 감사, 평가)에 젠더 관점을 결합하고 정부 예산보고서에 젠더 분석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⑴ UNIFEM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 :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은 1976년 UN 총회 결의안에 의해 창설된 여성개발기관으로,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전략개발을 위한 자금과 기술 지원으로 여성의 능력을 키우고,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 증진 및 남녀평등을 위한 각종 성평등 실현 사업을 펼치고 있음. 또한 세계 각국의 여성단체 및 정부와 연계하여 세계 여성정책의 변화와 국가 차원에서 남녀평등을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함.

UNIFEM은 17개 개도국에 지역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5개 선진국에 국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사업예산은 유엔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하며, 5명의 자문위원회(CC)는 1년에 한번 정책사항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

1) UNIFEM-OECD-NORDIC Council of Ministers-Belgium Government(2001)

침을 제공함. 현재 회원국은 에스토니아, 칠레, 한국, 노르웨이, 수단임. UNDP/UNFPA 집행위원회는 각국 회원들이 돌아가며 구성되며, 집행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UNDP의 활동을 지원하고 연례보고서를 매년 제출함. 주요 활동으로는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 개최 및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등의 국제 협약을 들 수 있음. 현재 UNIFEM은 전 세계적으로 성인지 예산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데, UNIFEM이 40여 국가에서 지지해온 성인지 예산은 여성의 개발욕구에 관한 자원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되고 있음.

⑵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경제발전과 세계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국제기구로,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음. 1948년 16개 서유럽 국가를 회원으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발족하였고, 1950년에는 미국・캐나다를 준회원국으로 받아들임. 1960년 OEEC의 18개 회원국 등 20개국 각료와 당시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대표가 모여 경제협력개발기구조약(OECD조약)에 서명함으로써 OECD가 탄생함.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한국, 멕시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비선진국까지 가입하여 2002년 현재 회원국은 30개국에 달함.

⑶ 북유럽 각료회의

북유럽각료회의(Nordic Council of Ministers)는 북유럽 국가들의 공동이익에 관련된 사안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협력 및 지원을 위하여 만든 협의체임. 참가국은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으로, 1962년 북유

럽 국가들이 체결한 헬싱키협정의 수정안에 따라 1971년 2월에 설립됨.

각료회의에는 회원국의 국무장관과 해당 사안의 주무장관이 참석하며, 공식적인 결정은 각 회원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확정됨. 북유럽 각료회의의 기금은 경제적 투자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문화・교육・사회복지・건강 등에 관련된 공동기구나 공동계획에 주로 사용됨.

3) 영연방사무국(The Commonwealth Secretariat)

성인지 예산 활동의 국제적 확산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영연방 사무국(The Commonwealth Secretariat)은 성인지 예산을 '여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다양한 집단에 대한 예산의 차별적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정부예산 분석으로 규정함. 즉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예산으로 전환하자는 것으로, 여성을 특별한 이해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부 정책, 계획, 그리고 프로그램에 젠더 이슈를 통합하려는 것임. 성인지 예산의 목적은 '정책과 공공지출, 세입의 적절한 분배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있다고 함(해외의 성인지 예산 : 다양성과 정책적 선택, 2007).

2. 성인지 예산 적용 모델과 추진방식

성인지 예산활동이 추진되는 방식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43개 국가가 참여한 2001년 브뤼셀 고위급 회의에서도 성인지 예산 모델이 획일적이기보다는 국가별로 다양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2007년 현재 성인지 예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는 70여 개국으로 추정되는데, 국가별 상황에 따라 성인지 예산의 유형과 추진방식에 차이가 있음(김영옥 외, 성인지 예산 분석기법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방안연구, 2007).

1) 모델의 유형

국가별로 적용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모델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첫째, 일반예산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을 적용하는 경우임. 이는 성인지 예산의 원론적 개념을 가장 충실하게 적용하고 있는 유형으로, 성인지 예산을 제도화하고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가 이에 속함.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일반예산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유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둘째, 성인지 예산의 초점을 여성이 대상인 여성예산에 두는 경우로, 정부의 총예산 중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예산을 비롯해 여러 부처의 성평등 목적을 위한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분석의 초점을 둠. 프랑스와 필리핀, 인도, 스리랑카가 이에 해당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대비 여성관련 예산을 분석하고 예산안 제출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음. 여성단체의 성인지 예산 활동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예산에 초점을 둔 성인지 예산 유형에 속함.

셋째, 정책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지표의 하나로 예산을 포함하고, 정책의 성별 수혜현황에 초점을 두는 경우로, 성인지 예산이라 지칭하지는 않으나 성인지 예산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음.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캐나다, 뉴질랜드가 이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음(제10조 정책의 분석・평가). 이에 근거해 2004년부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책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 관련 지표가 성별영향평가지표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음. 여성부에서 지침으로 제시하는 성별영향평가지표는 기본틀은 변하지 않고 매년 약간의 변경이 있는데, 2008년 성별영향평가지표와 지침에서는 '예산편성의 양성평등성'을 지표로 설정하고 예산 편성 시 성별 인원과 성별 정책 요구에 따라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지, 수

혜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지표에서 예산지원금의 규모에 있어 성별로 편차가 있지 않은지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음. 마지막으로 평가결과 정책개선방안 지표에서 성별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예산 개선안이 제시되었는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음.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 성별영향평가와 예산기획부터 예산집행, 예산평가 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젠더 관점을 통합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성별영향평가가 충실하게 시행되는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의 목적 또한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각각의 유형이 갖는 장단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우선 일반예산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을 적용하는 경우, 성인지 예산의 원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부서 공무원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수준이 미흡하여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음. 이 방식은 성평등 수준이 일정 수준 도달하고 성별분리통계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서 적용될 수 있음. 성인지 예산을 여성예산으로 개념화하여 분석하는 두 번째 경우에는 적용예산의 범위가 분명하고 전체 예산 중에서 여성을 위한 예산규모를 분석할 수 있고, 이해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예산분배 구조의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 부작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예산분배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정책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사전평가와 사후평가가 잘 수행되고, 평가결과의 정책 환원성이 원활하다면 성인지 예산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그러나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예산에 특별한 강조점을 두지 않으며, 성별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성인지 예산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짐.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지 예산 활동과 관련해 세 가지 유형의 모델들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음. 체계적이지는 않으나 여성단체에 의해 여성예산에 초점을 둔 성인지 예산 활동이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2년 정책의 성별영향평가가 제도화되면서 이를 통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활동이

가능한 구조가 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일반예산에 성인지 예산 적용이 제도화되고 2010년 본격적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성인지 예산 활동의 전문성과 충실성에 문제가 있기는 하나, 약 10여년의 기간 동안 세 가지 유형의 성인지 예산모델을 적용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음.

2) 예산수준과 성인지 예산의 적용

성인지 예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정책을 대상으로 하나 초기에 전면 적용은 어려움. 성인지 예산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준의 예산부터 적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성인지 예산을 적용할 수 있는 예산의 수준은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첫 번째는 거시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는 국가의 중장기재정운용계획에 성인지 예산을 적용할 수 있음. 국제기구에서 저개발국가를 지원하면서 거시경제정책에 성인지 예산을 적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적 기여, 국가빈곤퇴치계획에 젠더 관점 통합, 재정정책과 성평등의 관계를 분석하고 중장기재정계획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 등이 해당됨. 두 번째는 단년도 세입과 세출의 전체 예산에 성인지 예산을 적용하는 것임.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의 성인지 예산보고서가 이에 속함. 세 번째는 특정부처나 특정사업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3) 거버넌스 (Governance)형태

⑴ 성인지 예산의 거버넌스 개념

거버넌스(Governance)는 공동체 운영의 새로운 체제나 제도, 매커니즘 및 운영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의 통치나 정부의 대체 등으로 그 개념이 확대

되고 있음. 성인지 예산의 목적은 크게 3가지임. 첫째, 정책과 재정운용에 있어서 성평등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키고, 둘째,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며, 셋째, 성평등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예산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임.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첫 번째는 성별예산 통계 자료를 구축하는 것임. 그리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성별영향분석 및 영향에 따른 예산분석을 실시함. 성별에 따른 영향이 미치지 않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분석이 되어야 함. 거버넌스 관점에서 성인지 예산의 추진주체, 예산의 단계, 거버넌스의 방법을 구분하면 <표 2-3>과 같음.

거버넌스 관점에서 성인지 예산의 추진주체는 크게 행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로 구성됨. 기획재정부, 관련 정부부처, 여성부로 구성되는 행정부는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을 담당하고, 국회는 여러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안을 심의하며, 시민사회는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참여하고 결산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함.

<표 2-3> 성인지 예산 거버넌스 분석 모형

구 분	주체 및 수행업무	
추진주체	행정부	기획재정부
		관련 정부부처
		여성부
	국회	
	시민사회	
예산의 단계	편성	
	집행	
	결산	
거버넌스의 방법	예산안 심의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자체평가
		성별영향심층평가
	참여예산제	
	성인지 감사	

자료 : 김혜란, 2007(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부처 명칭 변경)

⑵ 성인지 예산의 거버넌스 유형

해외 사례 등에서 보여지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거버넌스 형태는 크게 '정부주도형'과 '시민사회주도형'이 있으며, 원조기구와 정부의 파트너십으로 진행되는 유형도 있음. '정부주도형'은 말 그대로 정부가 주도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성인지 예산제도를 최초 도입한 호주를 비롯하여 스웨덴,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정부주도형임.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시민사회 주도형'으로는 영국, 폴란드 등을 들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 원조기구와 정부로 구성된 파트너십, 원조기구와 정부 및 NGO로 구성된 파트너십, 원조기구와 의회 및 NGO로 구성된 파트너십 등 세 가지 형태로,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등 주로 남미, 아프리카, 동아시아에 분포해 있음.

<표 2-4> 성인지 예산제도의 유형별 시행주체

유 형			시행국가
선진국	정부주도형		호주, 스웨덴,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한국,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민사회주도형		영국, 폴란드
개발도상국	원조기구-정부 파트너십	재정부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모로코, 네팔 등
		여성부	필리핀, 말레이시아, 칠레
	원조기구-정부-NGO		인도(여성부), 멕시코(복지부), 탄자니아(재정부)
	원조기구-의회-NGO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자료 : 김영옥 외(2007)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2007년 발효)을 제정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정부주도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부주도형은 안정적인 제도화를 통해 시행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추진력이 높은 장점도 있지만, 시민사회주도형과 같은 자율적 예산분석이 불가능하며 정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음. 성인지 예산제도를 법으로 명시한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로 2000년에 재정법에 반영하였음.

3. 국내외 현황

1) 국내 중앙정부 현황

⑴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 경과

중앙정부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연도별로 추진한 경과는 다음과 같음.

○ 예산안 편성지침 개선(2005~2006)

－2005년도(2006 회계연도)부터 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성인지 예산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통보

○ 법적근거 마련(2006)

－2006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결산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 마련(2010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부터 시행)

○ 성인지 예산 교육과정 개설 및 연구(2007)

－성인지 예산 교육과정 신설・운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 시작

○ '2009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범사업 실시(2008)

－25개 기관(13부, 1처, 11청) 105개 사업

－양성평등정책사업 52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53개

○ 시행(2009)

⑵ 여성부 현황

여성부의 조직은 장관 및 차관 아래 1실 2국이 존재하며, 1실 2국은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권익증진국임. 성인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는 여성정책국 산하의 성별영향평가과로, 담당 업무는 성인지 예산제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성별통계 활성화,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교육 등임. 여성부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행방안으로 사업 기반의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방식과 세부사업 중 일부를 선정하여 담당 공무원이 분석과 입력을 하고 예산서를 작성하는 방식의 두 가지를 모두 실행하고 있음.

또한 최근 3년 동안 중앙부처에서 쓰이는 여성관련 예산을 분석하여 여성백서에 수록하고 있으며, 60여개의 시범사업을 통해 일반정책의 성별영향을 분석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는 여성에게 끼칠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2) 국외 현황

현재 성인지 예산을 도입한 나라는 60여개국에 이르지만, 실제 진행 과정과 내용은 국가별로 다양함. 국가별 특징과 시행 방식을 토대로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울시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안정적인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⑴ 중앙정부 사례

○ 호주의 성인지 예산 사례

호주는 1984년 처음으로 여성예산(Women's Budget)이라는 이름으로 성인지 예산을 도입한 국가임. 호주 정부(내각 내의 여성지위실, Office of the Status of Women이 주도)는 모든 부처가 매년 예산 지출의 결과를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하여 여성예산보고서(Women's Budget Statement)의 형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출을 ① 여성을 위해서만 사용된 지출, ② 공공기관에서 평등고용기회를 위한 지출(equal employment opportunity expenditures), ③ 일반 예산 지출(general budget expenditure) 이라는 세 범주로 나누어 작성하게 함. 예산서는 크게 두 개 부분, 30여개의 보고서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당해년도 예산서(budget papers)이고 다른 하나는 당해년도 예산안 부속서류(budget related papers)임. 예산서에는 당해 예산의 특징에 대한 예산안 보고서, 결산

보고서, 연방 및 지방정부 간 재정 연관성, 총리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안 부속서류는 재정, 세입세출 총괄표, 소득세 통계, 정부 정책 또는 사업 내용을 기재하고 있음.

<표 2-5> 호주 예산안 부속서류

1991~1992	1993~1994
No. 1 정부 안보 보고서 No. 2 국가 세입 세출 No. 3 소득세 통계 No. 4 해외 원조 프로그램 No. 5 여성예산서 No. 6 과학기술 예산 보고서 No. 7 호주 원주민을 위한 예산 보고서 No. 8 프로그램 성과보고서 No. 9 호주의 건강 보호	No. 1 정부 안보 보고서 No. 2 국가 세입 세출 No. 3 소득세 통계 No. 4 여성예산서 No. 5 사회정의 전략 No. 6 호주의 무역발전 프로그램 No. 7 프로그램 성과보고서 No. 8 일반 감사 보고서

<표 2-6> 호주 여성예산서 구조(1991~1992)

구분	내 용	
Part Ⅰ	서문 예산서의 내용	- 1991~1992년 예산 맥락 - 예산서 개요 - 본 예산서의 용도
Part Ⅱ	국가 여성의제(National Agenda for Women) 이행 보고서 2000년 국가 여성의제의 목표	- 1991년 여성을 위한 예산 하이라이트 - 국가 여성의제의 구조 - 여성의 목소리 - 여성을 위한 선택 - 여성을 위한 공정한 길 - 국제협력
Part Ⅲ	포트폴리오 프로그램의 여성에 대한 효과	- 호주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위원회 - 행정서비스 - 예술, 스포츠, 환경, 관광과 지역 - 법무 - 국방 - 고용·교육·훈련 - 재정 - 외교통상 및 무역 - 건강, 주택, 지역 공동체 서비스 - 이민, 지방정부와 민족 - 노사관계 - 산업, 기술과 상업 - 1차산업과 에너지 - 내각 - 사회보장 - 교통통신 - 재무 - 퇴역군인
부록	성평등 지표들	

여성예산을 도입한 초기인 1985~1986년의 경우 특별히 여성이나 소녀를 위해 직접적으로 배분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1% 이하에 불과하였음. 그 후 점차 여성만을 위한 특화된 정책 예산이 아닌 일반 예산의 지출을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 분석함으로써 관료들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함. 그러나 1984년부터 10년간 발간되던 여성예산서가 1990년대 들어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1994~1995년도 예산서에서는 전 부처의 사업에 대한 예산분석이 생략되고 간략한 예산 투입액만 기록하였음. 이후 1997년 여성예산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폐간됨.

호주는 성평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던 노동당 정부에서 1996년 보수당 정부로 정권이 이양되면서 현재는 일부의 주에서만 여성예산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호주의 사례는 전형적인 정부주도형으로, 정부의 의지가 강할 경우 전국적인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여성예산 조치가 시행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후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스웨덴의 성인지 예산 사례

스웨덴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면서 성평등이 발전한 대표적인 국가로, 부부소득이 아닌 남·녀의 소득세를 개인별로 징수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된 것은 2004년부터이나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은 1980년대 후반부터 도입됨.

1987~1988년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 배분 보고서가 발간되어 처음으로 성평등 정책 예산에 관한 논의가 언급됨. 이후 1998년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관점차이에 대한 공식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999년 성평등 관점을 어떻게 정부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됨. 2002년 성평등국(the Division for Gender Equality)과 재정부 예산국(the Budget Department at the Ministry of Finance)이 공동으로 평등한 분배(An Equal Share)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전체 예산과정에 젠더 관점을 부과하기 위한 방법론과 도구 개발

이 이루어짐.

스웨덴 정부는 2004년 성 주류화(양성평등정책의 보편화)를 위한 특별 6개년계획(2004~2009년)을 수립하여, 모든 정책분야에 걸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가능한 한 모든 부서에서 성평등 목표와 성과기준들을 세우도록 하고 있음. 2004~2005년에는 정부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분석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절반 이상의 정부 기관들이 성평등 목표 수립을 포함한 성평등 의무를 부여받음. 즉 행정부에서 고위관료들을 보조할 성평등 전문가들을 두어 시・도 관청, 지역 병원, 대중교통 등의 기관에 성평등과 성 주류화에 관한 정보와 훈련을 제공함.

<표 2-7> 스웨덴 성인지 예산제도 발전 과정

연 도	내 용
1987~1988	- 성 주류화에 대해 정부 경제정책 차원에서 처음으로 논의됨 -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 배분에 대한 예산서 부록(an appendix to the Budget Bill on the distribution of economic resources between the sexes) 발간
1998	-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관점 차이에 대한 공식 보고서 제출
1999	- 성평등 관점을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연구 수행
2002	- 성평등국(the Division for Gender Equality)과 재정부 협력으로 평등한 분배(An Equal Share) 프로젝트 수행
2003	- 지역발전, 사회적 서비스, 교통 등 세 가지 정책 영역의 예산과정에 성인지 예산을 반영하는 시범 프로젝트 착수 - 성 주류화 계획(a Plan for Gender Mainstreaming at the Government Offices(2004~2009)) 의회 제출
2004	- 성 주류화 계획(a Plan for Gender Mainstreaming at the Government Offices(2004~2009)) 채택

○ 남아공의 성인지 예산 사례

1990년대 중반에 남아공에서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후원하여 정부, 시민단체, 연구자, 정당이 연합하여 여성예산 조치(Women's Budget Initiative)를 실시하였음. 1994년 민주정권이 수립되어, 1995년부터 시민단체와 정당이 연합하여 여성예산조치(South African Women's Budget Initiative-WBI)를 약 5년

간 실시함. 1995년에 실시하여 1996년에 출간한 여성예산 조치의 첫 번째 보고서에는 노동, 복지, 주택, 교육, 공공서비스, 조세제도가 남성과 여성의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수록되어 있으며, 1997년에 농업, 치안 분야 등을 추가함.

1997년 남아공의 '삶의 질과 여성지위 위원회(Committee on the Status and Quality of Life of Women)'는 재경부에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군사비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국방부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9.1%(1992/1993)에서 5.7%(1997/1998)로 삭감되었음. 감액된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로 할당되어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정책에 쓰여, 사회복지비용이 43.8%에서 46.9%로 증가됨.

이후 정부가 WBI의 성과들을 수용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남아공의 성인지 예산은 시민단체와 정부의 역할분담과 상호협조가 비교적 잘 된 사례로 평가됨.

○ 인도의 성인지 예산 사례

인도가 '여성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은 정부예산 중 '여성을 위한 일정 비율의 예산'을 의미함. 인도에서 여성정책은 5년마다 수립되는 포괄적인 국가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발전되어 왔는데, 성인지 예산의 개념은 1987~1992년의 제7차 계획 때부터 반영되었음.

7차 계획에서는 주로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에 예산을 배정하였는데, 여성아동부에서는 27개 규모의 여성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모니터링하였으며, 8차 계획에 들어서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함. 이어서 9차 계획에서는 중앙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차원의 모든 개발예산에서 여성 대상 예산을 최소한 30% 이상 확보하고, 이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여성예산계획(Women's Component Plan)을 도입함. 그리고 최근의 10차 계획에서 비로소 여성예산계획(WCP)과 구분되는 진정한 의미의

성인지 예산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아직 성인지적 예산 분석의 중요성보다 여성예산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음.

인도 정부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추진하는 중심부서는 여성아동부로, 2006년 독립 부처로 승격되어 성인지 예산제도를 주관하고 있음. 여성아동부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을 위해 부처 간, 부처 내 다양한 조직과 연계하며, 각 부처에 대한 협조는 재정부를 통해 이루어짐. 재정부는 2004년 각 부처 내에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인 부처 간 조정위원회(Inter-Department Committee)를 구성하였고, 2005년부터 각 부처 내 담당기구 설치를 주도한 결과 41개 부처에 성인지 예산 담당기구가 설치되었으며, 2009년 현재 56개 부처로 확대됨.

인도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착하게 된 데는 세 가지 성공요인이 있음. 첫째, 국가발전기본계획이라는 국가의 포괄적 기본계획 내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포함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인지시킬 수 있었다는 점임. 둘째, '여성예산'의 개념으로 성인지 예산을 도입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에 생소한 공무원들에게 이를 쉽게 각인시킴. 마지막으로, 여성아동부와 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부처 간 연계를 효율적으로 이루어냈다는 점임.

<표 2-8> 인도 국가발전기본계획법 상 성인지 예산제도 발전 과정

연 도	내 용
7차 계획 (1987~1992)	- 특별히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의 예산에 대한 특별한 관심 - 여성아동부는 27개 여성대상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8차 계획 (1993~1997)	- 젠더 관점과 일반적 개발 부문 예산 중 일정 부분을 여성에게 보장할 필요를 처음으로 강조 - 여성 대상 기금 조성의 필요성 제기
9차 계획 (1997~2002)	- 여성예산계획(Women's Component Plan : WCP)을 국가발전기본계획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채택 - 중앙정부와 주 정부 모두에서 예산의 30% 이상이 여성 관련 부문에 할당되도록 함
10차 계획 (2002~2007)	- 여성예산계획(WCP)과 성인지 예산의 개념적 구분과 상호보완적 역할의 강조

자료 : 해외의 성인지 예산 : 정부주도 3개국 심층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 필리핀의 성인지 예산 사례

필리핀에서는 1996년 이후 모든 정부 부처는 적어도 5%의 예산을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위해 할당해야 한다는 조항을 일반세출예산법에 추가하였음. 이를 '젠더와 개발예산'(Gender and Development Budget)이라 하나, 예산의 최소 비율을 별도로 할당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

⑵ 지방자치단체 사례

○ 독일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독일 연방법에 규정된 성평등에 관한 법률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성평등 법률로 남녀 성평등을 뒷받침하고 있음. 기본법 제3조 2항과 연방평등법(Bundesgleichstellungsges-etz : BGleiG), 연방평등집행법, 연방일반평등처우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AGG)을 지방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주성평등법(Landesgleichstellungsgesetz : LGG)을 제정하였으며, 주마다 명칭에는 차이가 있음.

행정실무차원에서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주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예산서 상에서 성 평등법의 대상사무가 되는 개별사업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주정부는 주 차원에서 주평등법의 실현을 위한 예산서를 작성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예산서를 작성함.

○ 미국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는 1998년 4월 미국에서 최초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조례로 채택하였으며, 조례의 시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9년 성별분석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함. 이 특위는 2003년 2월 5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한 후 해산하였으며, 현재는 여성지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대체되어 활동하고 있음.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2003년 12월에는 LA에서 CEDAW 조례가 통과

되었으며, 2007년 9월에는 조지아주 풀톤카운티 정부에서 성평등본부 설립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됨.

○스페인 안다루시아

스페인은 정부와 의회에 대한 모든 중요한 제안은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함. 그러나 지역별로 시행 주체가 달라 성과 역시 다르게 나타남.

바스크 지역은 바스크여성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1999년부터 성인지예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 2002년에는 지역정부 6개 부서의 소속 공무원이 각각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음. 그러나 바스크여성연구소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양성평등이 아닌 '여성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 공무원들이 정규업무로 생각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성인지예산 연구가 중단됨.

반면 안다루시아 지역은 성공 사례로 꼽을 수 있음. 안다루시아는 스페인에서 개발이 가장 늦게 진행된 지역으로, 정부 차원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성을 활용하기로 결정함. 재경부 차관 주도로 성인지 예산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2007년부터 공식 예산서류로 각 법안에 대한 성별영향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였음.

4. 시사점

성인지 예산에 대해 국내외 중앙정부의 사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나라마다 추진 체계나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였으나, 기본적으로 성평등 관점에서 재정 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정부의 모든 예산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재정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른 예산 및 정책의 변화를 추구함.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설립하여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일임하도록 하며, 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제도는 실행 주체의 의지가 중요한 제도임. 정부와 각 부처에서 성인지의 개념과 필요성을 깨닫고 국가 정책에 이를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적 예산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여성정책 담당기구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임. 성인지 예산제도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2010년 처음 실시되는 제도이므로 각 부처에서는 이의 원활한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정책의 도입에는 공감하면서도 실무를 수행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지자체인 서울시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실・국에서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예산담당부서와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이 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임.

보다 정확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실・국들 간 사업 경과 및 의견을 조정해 나가야 하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함. 성인지 예산의 실시에 맞추어 성평등 분석 방법 및 예산편성 방법, 예산안 작성 실습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실・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사업 역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 사항임.

마지막으로, 모든 정책은 제도적 추진 근거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임.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도적인 합의를 통해 제도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제도는 장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제도로 처음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듦. 따라서 이같이 장기적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제도적 근거의 마련은 필수적임. 본 사례에서 성 주류화 계획 및 국가발전기본계획, 연방평등법 등을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 근거로 삼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한다면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3장 서울시 성인지 예산 수행여건과 한계

제1절 성인지 예산 관련 제도와 사업
제2절 성인지 예산 행정기반
제3절 성인지 예산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제3장 서울시 성인지 예산 수행여건과 한계

제1절 성인지 예산 관련 제도와 사업

1.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사업 현황

1) 성별영향평가 사업 및 추진기관

2009년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과제는 총 7개로 심층과제 1개, 자체평가과제 6개로 구성됨. 선정방법은 여성가족재단에서 주최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선정함.

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추진

○ 생활권단위 자전거친화타운 조성사업

－여성가족재단에서 추진하는 심층평가 과제

－도로교통본부, 자전거교통 추진반 주관

－자전거로 통근·통학을 위한 교통수단 분담률이 남성 1.7%, 여성 0.1%로 많은 차이를 보임. 이에 따라 성별로 서로 다르게 인지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시설 및 이용행태 등을 성별 고려요소와 선호도 차이를 분석하여 반영함으로써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도로교통 분야에서 양성

평등정책을 실현함.

- 성별영향평가의 영역을 복지와 취업분야에서 도로교통분야로 확대하여 2020년까지 33개소의 자전거친화타운을 건설할 계획임.

○ 서울숲 조성 및 운영정책

- 서울시의 도심 공원이 증가하고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도시 공원에 대한 연구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별의 관점에서 평가한 경우는 거의 없음.
- 특히 서울숲 조성 사업은 2,399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사업으로, 예산규모가 크고 수혜 대상 범위가 넓어 성별영향평가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선정함.
- 도시공원은 안전성, 공원시설이용형태, 편의성, 접근성 측면에서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곳으로, 성별의 구분 없이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전 세대에 걸쳐 누구나 이용하는 공간이 되어야 함.
- 여성들은 도시 공원을 '가족의 여가를 위해' 또는 '여성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이용하고 있음.
- 여성들의 공원 이용 행태와 공원 시설 등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여성친화적인 공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여가활동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서울시 관광종사인력 양성정책

- 관광종사인력에 대한 성별 분석에 따르면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은 높으나, 노동집약적이고 저임금인 업무를 많이 맡고 있고 비정규직 및 하위직급에 집중되어 있음.
- 서울시 관광종사인력 양성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서울시의 정책이 전반적인 관련 시장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성별 역학관계의 변화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함.
- 여성사 및 여성문화유산의 발굴확산 프로그램, 여성의 노동경험을 반영

하는 프로그램 등 여성의 경험과 특수성을 가시화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

○서울시 환경교육정책

－환경 문제는 일반적으로 성 중립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환경정책에서 성별이 변수로서 고려되지 않고 있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환경오염의 방지 및 책임의 의무가 가사노동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여성으로 전제되기 쉬움.

－환경교육 내용 및 운영에 이러한 전제가 반영될 경우 정책은 불균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 방지 및 책임의 의무를 남녀에 동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환경교육정책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

○장애인 고용정책

－서울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재가복지 서비스 확대, 복지시설 확충, 생활안정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 재활시설 운영 및 서비스 확대, 자립지원, 편의시설 확충, 이동불편 해소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나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여성장애인의 자립권을 확보하고 고용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장애인 정책 중 고용과 관련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⑵ 서울시 실·국·본부 추진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사업

－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주관

－이 프로그램이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남녀 청소년들에게 동등한 기회제공 여부와 미래 비전 수립, 진로선택 및 만족도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성 형평성 등)

○잠실종합운동장 청소년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

－문화국(시립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주관

－미래 성별관계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 청소년 모두 생활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다양하고 변화된 욕구를 수용하면서도 성별, 학교급별, 종목별로 다양한 청소년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정책만족도 향상

○청년일자리사업(행정인턴 프로그램 운영)

－경쟁력강화본부(일자리정책담당관) 주관

－경기불황으로 청년층의 취업수요 감소에 따라 여성인력의 취업이 더욱 어려운 현실에서 시의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성별 참가비율, 전공, 업무, 임금 등의 차이를 파악하여 성 형평성 도모

○자활공동체 소규모 창업지원사업

－복지국(자활지원과) 주관

－정규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성의 경우 창업이 대안적 고용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가자의 성별, 창업종목, 창업규모의 차이 등을 파악

－성별 생활환경(부양가족 등), 빈곤의 원인, 창업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만족도 등의 차이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

○주차장 시설개선(시설운영)사업

－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주관

－서울시의 여행 프로젝트 ‘여행주차장’ 브랜드 사업으로 주차장 시설개선사업이 단순히 시설개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별 요구도를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만족도 향상 및 양성평등한 정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

○강북대형공원 조성공사

－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 주관

－성별 공원 이용행태 및 불편사항에 대한 차이를 검토하고, 가로등, 대중교통 접근성, 화장실, 벤치, 어린이놀이방, 유모차 및 휠체어 대여, 주차 등 안전 및 편의 요소에 대한 성별 요구의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시책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2)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관계

⑴ 제도적 기반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제10조 정책의 분석·평가 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 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면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가 제도화됨.

서울시도 2004년 서울시 여성발전조례(제8조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를 '시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 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⑵ 평가지표 개발과 시범사업의 유형

여성부는 성별영향평가지표를 개발하여 2004년부터 성별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해옴. 2006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어 2008년에는 기초자치단체에까지 성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3년 성별영향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문화국 체육청소년과의 대안교육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시행함(서울시 성인지적 시정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 2003년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지표는 12개였으며, 이중 예산 관련 지표는 1개로 '여성을 위한 사

업예산 편성 수준'이 있음. 서울시는 2004년 서울시 보건・복지정책(한국여성개발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2005년 문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년 서울시 장애인 고용정책 성별영향평가(재단법인 서울여성), 2007년 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숲 조성 및 운영정책 성별영향평가, 서울시 환경교육정책과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2008년에는 서울시관광종사인력양성정책 성별영향평가를 하였음. 2009년에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생활권단위 자전거친화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6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음.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청소년국제교류사업(청소년담당관), 잠실종합운동장 청소년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문화국), 청년일자리사업(일자리정책담당관), 자활공동체창업지원사업(자활지원과), 주차장 시설개선사업(주차계획담당관), 강북대형공원 조성공사(공원조성과)임.

성별영향평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수혜자의 성별 구분이 비교적 파악하기 용이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성별 분리통계를 생산・활용하기 용이하며, 성별 예산 편성, 성별 수혜 현황을 가시적으로 평가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음. 개인 대상으로 수혜자의 성별 구분이 가능한 시범사업으로는 대안학교사업, 건강증진사업, 청소년스포츠교실, 장애인고용정책, 관광종사인력 양성정책,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청년일자리사업 등이 있음. 개인이 아닌 가구가 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전체 수혜자의 성별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짐. 이 경우에는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주를 기준으로 성별 구분을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지원사업을 들 수 있음.

성별영향평가 시행 초기인 2004~2006년에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사업 수혜자가 개인이 되는 사업이 선정되는 경향이 있었음. 성별영향평가가 3~4년에 걸쳐 시행되는 동안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와 정보 축적이 공무원

과 전문가 사이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2007년부터는 공원조성 및 주차장 설치, 자전거 친화타운 조성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조성사업으로까지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시설조성사업의 경우, 성별영향평가가 사전에 시행되어 사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설조성사업의 경우 성 중립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공중 화장실처럼 알려진 사례를 제외하고는 사업과 관련된 성별 관련성을 전문가와 공무원 모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음.

⑶ 성별영향평가 지표

여성부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와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있으며, 각 기관은 이 지표와 지침을 기준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음. 여성부에서 작성된 성별영향평가 지표의 경우 기본체계는 바뀌지 않으나, 개별 평가지표는 매년 약간씩 수정되고 있음. 성별영향평가지표에는 예산 관련 지표가 있으며, <표 3-1>은 여성부가 작성한 2005~2009년의 성별영향평가지표를 나타낸 것임.

여성부의 2005년 성별영향평가를 살펴보면, 정책집행단계에서 '성인지적 예산 편성'이 지표로 설정되었음. 2006년에는 정책입안 및 결정단계에서 '예산편성의 양성평등성', 그리고 정책평가단계에서 '정책수혜(예산배분결과 포함)의 양성평등성'이 지표로 설정되었음. 2009년에는 정책입안 및 결정단계에서 '성인지적 예산편성'이 지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정책평가단계의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과 '정책개선 및 환류'지표에서 예산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음. '성인지적 예산편성 지표'의 점검 포인트는 2가지임. 첫째, 사업계획서의 예산편성안이 남녀비율과 정책(사업)에 대한 성별 요구를 고려하여 책정되었는지 여부, 둘째, 사업계획서의 예산 편성안이 수혜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여부가 그것임. 정책평가단계의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 지표의 점검 포인트는 예산집행액의 규모가 모집단의 성별

과 비교해 형평한지 여부임. '정책개선 및 환류' 지표의 점검 포인트는 예산반영 여부임.

<표 3-1> 여성부의 연도별 성별영향평가지표 구성(2005~2009)

정책 단계	2005	2006	2007	2008	2009
공통 사항	-	① 성별분리통계의 생산·활용	① 성별분리통계의 생산·활용	① 성별분리통계의 생산·활용	① 성별분리통계의 생산·활용
1단계 정책 입안 및 결정	① 정책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성별 관련성 파악 ② 양성평등목표와 정책수단 확인 ③ 정책입안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④ 정책의 성별영향 예측	② 정책의 성별관련성 파악 ③ 정책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④ 예산편성의 양성평등성	② 정책의 성별관련성 파악 ③ 정책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④ 예산편성의 양성평등성	② 정책의 성별관련성 파악 ③ 정책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④ 예산편성의 양성평등성	② 정책의 성별관련성 파악 ③ 정책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④ 성인지적 예산 편성
2단계 정책 집행	⑤ 성인지적 예산 편성 ⑥ 성인지적 정책서비스 전달 및 홍보	⑤ 정책 서비스 전달 방식의 양성평등성 ⑥ 정책홍보방식의 양성평등성	⑤ 정책 서비스 전달 방식의 양성평등성 ⑥ 정책홍보방식의 양성평등성	⑤ 정책 서비스 전달 방식의 양성평등성 ⑥ 정책홍보방식의 양성평등성	⑤ 정책 수행방식의 양성평등성
3단계 정책 평가	⑦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⑧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⑨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⑦ 정책수혜(예산 배분결과 포함)의 양성평등성 ⑧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⑦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 ⑧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⑨ 평가 결과 정책개선방안	⑦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 ⑧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⑨ 평가 결과 정책개선방안	⑥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 ⑦ 정책개선 및 환류

<표 3-2>는 여성부가 작성한 2009년 성별영향평가 지표별 점검 포인트임. 우리나라는 정책입안에서 정책평가까지 정책 전 단계에 걸쳐 성별영향평가를 하도록 지표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도 정책입안에서 집행, 평가까지 전 단계에 걸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표가 구성되어 있음.

<표 3-2> 2009년 여성부 성별영향평가 지표별 점검 포인트

평가지표	점검 포인트
① 성별분리통계의 생산·활용	1-1. 사업계획서 및 사업평가보고서, 백서 등 주요문헌에서 성별통계가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 • 정책기획서(사업계획서), 사업평가보고서, 지자체 통계연보, 백서의 사업현황자료(표) 성별통계 여부 검토 1-2. 관련 법령 및 사업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적 통계 양식이 성별 통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 점검 •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사업지침의 사업신청서, 지원서, 결과보고서 양식 검토
② 정책의 성별관련성 파악	2-1. 정책(사업)과 관련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현실과 요구를 파악하였는지 점검 • 선행조사 결과, 실태조사, 시민단체 요구에 나타난 성별 요구 확인 2-2. 파악된 성별 현실과 요구는 기획안에 반영되었는지 점검 • 사업계획서 내용 검토 2-3. 정책(사업) 목적 및 수단이 정부의 관련 양성평등 정책(여성발전기본계획 등)과 부합하는지 점검 • 여성발전기본계획, 여성인력종합개발계획, 국정과제 등에 나타난 정부 양성평등정책 기조 파악
③ 정책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3-1. 정책(사업)의 자문、심의、의결 관련 위원회 또는 정책(사업) 선정、심사、평가에 관여하는 구체적인 실무위원회가 있는 경우 관련 위원회의 역할과 성별위원 비율 점검 • 자문, 심의, 의결 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참조 • 사업 선정、심사、평가 관련 실무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참조 • 담당부서 종사자 직위、성별 비율 점검 3-2. 양성평등 정책 개선 또는 여성 위원 위촉이나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여성전문가 pool 확보 등)이 있는지 점검 • 양성평등 정책 개선 노력 또는 여성 전문가 pool 확보 방법 점검
④ 성인지적 예산 편성	4-1. 예산 편성 시 남녀 비율과 정책(사업)에 성별 요구를 고려하여 책정되었는지 점검 • 해당 사업 사업계획서 예산편성안 분석 4-2. 수혜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점검 • 해당 사업 사업계획서 예산편성안 분석
⑤ 정책 수행방식의 양성평등성	5-1. 홍보 방식이 남녀 수혜 대상자가 해당 정책(사업)에 대해 동등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점검[사업 인지도] • 해당 사업 홍보매체, 홍보 관련 지침 분석 5-2. 사업 수행 방식이 남녀가 사업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수혜받을 수 있는지 점검 [서비스 접근성] •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 신청 방식 분석 • 해당 사업 담당 공무원 및 인력 구성, 성인지력 조사(면접) • 해당 사업 지침 사업 내용 분석
⑥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	6-1. 정책의 수혜자 성비가 정책 대상 모집단과 비교해 형평한지 점검 [인적 형평성] • 지역 성별통계와 정책 집행 결과 비교 6-2. 예산집행액(지원금)의 배분 규모는 모집단과 비교해 형평한지 점검 [예산집행의 형평성] • 예산집행보고내용 참조 6-3. 수혜자의 주관적인 정책만족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지 점검 [주관적 만족도] •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참조

<표 계속> 2009년 여성부 성별영향평가 지표별 점검 포인트

평가지표	점검 포인트
⑦ 정책개선 및 환류	7-1. 사업 평가 결과, 정책의 성 평등성 개선을 위한 노력 사항, 예산반영 여부를 점검 [사업 개선방안] [이전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인한 개선사항 점검] • 지표별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내용 정리 • 익년도 사업계획서 • 이전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 다년도 사업의 경우, 위 7-1에서 도출된 결과는 후속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점검 [연속 사업 환류 점검] ※ 이전 성별영향평가 수행과제인 경우 이전 성별영향평가 수행 당시와 현재 정책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 •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인한 변화는 어느 정도인지 점검 7-2. 정책 집행 결과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지 점검 [기대효과와 한계점] •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만약 성별영향평가가 제도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실 있게 시행될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을 거의 달성할 수 있게 됨.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평가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에서부터, 이후 예산집행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친 수혜와 성차별을 개선하는 데 미친 영향을 사후 평가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는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음. 동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는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보고서(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동법 제57조(성인지결산서의 작성)는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예산편성단계에서 정책(사업)에 대한 성별 요구 확인과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집행에서 정책대

상 수혜자의 성별 형평성, 예산집행액 규모의 성별 형평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평가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부서마다 정책(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충실하게 시행하고 매년 평가결과의 정책 환류와 정보를 축적한다면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의 원칙,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작성은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착되고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가 전제되어야 함. 한편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사업을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임.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상호 보완적 영향을 미치면서 상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음.

⑷ 성별영향평가사업의 예산 관련지표 평가 결과

<표 3-3>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시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성별영향평가에서 예산 관련 지표의 평가결과를 정리한 것임. 성별요구를 반영하거나 수혜도가 낮은 집단을 고려하여 성별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출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공무원은 정책사업이 성 중립적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성별 관련성을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성별 분리통계도 작성하지 않고 있음.

<표 3-3>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사업의 예산 관련 지표의 평가결과

사업명	평가결과
서울시 대안학교사업(2003)	- 성별요구를 반영한 분리된 예산항목은 없으나, 사업성과는 양성평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음. - 10대 여성과 남성 특성을 반영한 예산 항목 설정을 권고함(예 : 10대 미혼모, 성매매 여성을 고려한 대안교육사업, 성교육,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예산 항목 설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립·자활 지원사업(2004)	- 성별 요구를 반영한 예산편성이나 여성지원예산은 없음. 여성 참여율이 90%임. - 참여여성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이를 반영한 자립·자활사업을 개발하고, 적절한 성별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 개발을 권고
기초생활보장 부가급여(2004)	- 성별 예산 편성과 여성지원 예산은 없음. - 수혜자의 다수가 여성노인과 모자가구로 이들 특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

<표 계속>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사업의 예산 관련 지표의 평가결과

사업명	평가결과
건강증진사업 (2004)	- 성별요구를 고려한 예산편성은 없음. 다만 여성질환(유방암)과 남성질환(전립선)사업의 경우 성별로 분리되어 있음.
가족보건사업 (2004)	- 성별요구를 고려한 예산편성은 없음. 다만 모성건강사업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됨. -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보건사업을 제안
음식점 서비스 수준 글로벌화사업(2004)	- 성별요구를 고려한 예산편성은 없음.
문화정책 (2005)	- 2005년 문화국 예산은 성별 예산 편성은 없음. 48개 사업 중에서 여성명칭을 붙인 사업은 3개 사업임. 서울시 산하 문화기관과 청소년수련관 중에도 성별 예산 편성을 하는 기관은 없음. - 예산 항목 성별분리 편성 제안(예 : 서울미술관 작품구입예산과 지출의 성별 편성, 청소년스포츠교실사업의 예산 책정 시 참여율이 저조한 여자청소년을 고려한 별도 예산 책정)
장애인고용정책	- 성별요구 및 수혜도가 낮은 여성을 고려한 성별 예산편성은 없음. - 여성장애인 훈련 및 취업을 위한 예산 별도 편성 제안
서울숲 조성 및 운영정책	- 성별요구 및 수혜도가 낮은 집단을 고려한 예산 편성은 없음. - 취약계층 여성과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예산 별도 편성 제안 - 여성노인 접근성 확보와 이를 위한 별도 예산 편성 제안
서울시 관광종사인력 양성정책	- 성별요구 및 수혜도가 낮은 집단을 고려한 성별 예산 편성은 없음. - 여성사 및 여성문화유산 발굴·확산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 제안

3) 성별영향평가사업의 한계

서울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서 지표별 평가결과를 보면 '정책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의 경우,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가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30% 할당'이라는 정책을 시행해온 것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양성평등참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성별을 고려한 사업예산 편성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음.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여성과 남성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위해 성별분리예산, 또는 여성을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이 제안이 향후 사업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음. 이는 평가결과를 향후 사업에 반영되도록 강제하거나 점검하는 내부 시스템이 없기 때문임.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사업을 기획・집행・평가하는, 즉 정책의 전 단계를 주관하는 공무원이 사전평가를

하는 것이 평가 취지에 가장 부합됨. 그러나 성별영향평가 시행 초기단계에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도가 낮아 전문가에 의한 사후평가로 시행되어옴. 여성부 지침에 의해 서울시는 몇몇 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으나, 평가결과를 정책에 환류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 향후 사업의 성인지 예산 편성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여성이 행복한 서울
Women Friendly Seoul

1) 개요

⑴ 개념

중앙정부 및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여성정책은 성차별 극복, 남녀평등 등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 주력해왔음. 이 때문에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호주제가 폐지되는 등 법·제도적 차원의 평등은 상당히 개선되었음. 반면 도로, 교통, 문화, 주택 등의 분야에서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 생활인으로서 여성은 일상적인 삶에서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음. 따라서 여성 등 시민고객들이 도시생활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여성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뜻하는 서울시 여행(女幸) 프로젝트가 시작됨.

기존 여성정책의 주류인 돌봄과 일자리 창출 분야 이외에 안전, 편리, 넉넉함을 중심으로 하는 총 5개의 중점과제와 9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5개 중점과제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여성 친화적인 도시환경 구축 및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림으로써 시민의 행복지수를 제고함.

서울시는 민선 4기 역점사업으로 독자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 중임. 여행 프로젝트 시작 초기에는 여성 친화적 도시공간, 즉 물리적 환경에 사업의 중점을 두었으나, 곧 일자리, 보육, 문화 등의 영역으로 사업영역이 확대되었음. 2007년부터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공원이나 주차장 조성사업이 선정된 것도 여행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그림 3-1>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개요

⑵ 추진체계

여행 프로젝트는 서울시 전 실·국, 투자기관, 출연기관에서 여성의 경험을 반영한 4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여성가족정책관은 실적 관리를 하는 체계로 추진되고 있음. 각 실·국은 매년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진상황, 문제점, 개선대책 및 향후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매년 올해의 여행상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음. 이러한 추진방법은 서울시 전 차원으로 여행 프로젝트를 확산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부서에서 반감을 갖거나 호응도가 낮아 확산속도가 느리고 평가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사업과 비교할 때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실·국별로 발굴된 여행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성별영향평가가 시행되어야 했는데, 성별영향평가와 연계되지 못하여 한계점이 나타남.

<그림 3-2>에서 보듯이 주요 추진체계는 여행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 각 실·국·본부, 자치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임. 컨트롤 타워인 여성가족정책관은 프로젝트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성과 관리를 담당하고, 각 실·국·본부는 여성의 시각과 경험이 반영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4개년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 보고를, 각 자치구는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생활친화적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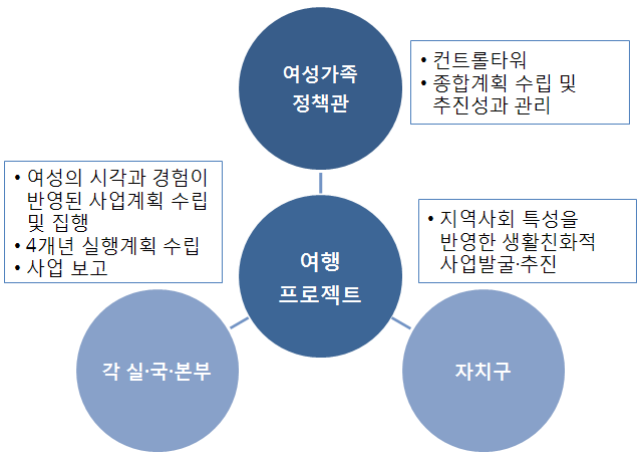

<그림 3-2>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추진체계

⑶ 추진전략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의 적극적 사회기여와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다음 다섯 개의 추진전략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여성정책의 지평을 교통·문화·건축·도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까지 확대하여 여성정책의 시민체감도를 제고

○기획·설계단계에서부터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하는 사전적·예방적 접근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

○여성·보육·청소년 분야에서 독창적인 신규사업을 개발·추진하여 기존 여성정책을 내실화

○범서울시적 종합추진체계 및 민·관·학 공동협력체계 구축으로 효과 극대화

○사업의 의의·내용·효과 등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파하여 민선4기 창의 여성정책으로 브랜드화

<그림 3-3>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기대효과

2) 주요 사업 및 추진 성과

⑴ 주요 사업

주요 사업은 '돌보는 서울', '일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 등 5개 분야의 90개 사업임.

돌보는 서울은 보육지원 및 가족·돌봄지원, 소외여성지원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으며, 일있는 서울은 주부 일자리창출, 창업 및 기업지원을, 넉넉한 서울은 여성친화 문화프로그램, 여성 교육프로그램, 여성 정보화를, 안전한 서울은 도시설계, 도시안전, 도시환경, 여성건강을, 편리한 서울은 여성편의시설, 보도, 공공시설, 대중교통을 중심과제로 함.

<표 3-4> 여행 프로젝트 주요 사업

영 역	내 용
돌보는 서울	보육지원, 가족·돌봄지원, 소외여성지원
일있는 서울	주부 일자리창출, 창업 및 기업지원
넉넉한 서울	여성친화 문화프로그램, 여성 교육프로그램, 여성 정보화
안전한 서울	도시설계, 도시안전, 도시환경, 여성건강
편리한 서울	여성편의시설, 보도, 공공시설, 대중교통

돌보는 서울의 사업은 20개로, 이중 15개 사업이 보육시설 설치를 비롯한 보육사업임. 그러나 관련 부서는 보육담당관, 저출산대책담당관뿐만 아니라 문화국, 주택국, 복지국, 경쟁력강화본부, 경영기획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광범위하게 걸쳐 있음. 사업별로 4개년 예산과 연도별 예산을 편성하여 제시하고 있음. 돌보는 서울의 사업 중에서 사업대상자로 여성을 분명하게 명시한 사업은 여성재활쉼터 설치와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등 2개임. 그 외의 사업은 보육, 가족 지원사업으로, 이는 여성이 자녀양육 및 가족 내 돌봄을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임. 돌보는 서울의 세부 사업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5> 돌보는 서울 세부 사업(2009)

세부영역	연번	사업명	예산(백만원)
보육 지원	1-1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36,158
	1-2	시 청사 등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	1,784
	1-3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강화	3,128
	1-4	보육시설 배상보험지원	883
	1-5	보육도우미 운영	3,131
	1-6	육아휴직 활성화 및 보육료 지원	180
	1-7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	1,663
	1-8	서울키즈센터 건립 운영	10,574
	1-9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원	8,547
가족·돌봄 지원	1-10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480
	1-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378
	1-12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 검사	69
	1-13	소외된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기회 제공	23
	1-14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237
	1-15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노인돌보미 바우처	4,005
	1-16	아리수와 함께하는 복동이 행복지원 프로젝트	25
	1-17	저소득 취업모가정 자녀를 위한 꿈나래 교실	2
소외 여성 지원	1-18	중학교 방과후 보육·학습프로그램 교실 운영	3,210
	1-19	여성재활전문쉼터 설치·운영	282
	1-20	여성장애인지원(홈헬퍼) 사업	500
	1-21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토털 맞춤형 보호서비스	190
	1-22	이주여성 자활공간터 설치 운영	1,180
	1-23	다자녀가정을 위한 세제개선 추진	비예산사업
	1-24	성인지적 복지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10
계			77,639

일있는 서울의 사업수는 12개로, 이중 6개 사업이 비예산사업이며, 사업대상자가 여성으로 명시된 사업은 6개임. 사업주관 부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재무국, 행정국, 경쟁력강화본부 이외에 서울시 투자기관인 산업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상수도사업본부가 포함되어 있음.

<표 3-6> 일있는 서울 세부 사업

세부영역	연번	사업명	예산(백만원)
주부 일자리 창출	2-1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	33,500
	2-2	여성직업훈련생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87
	2-3	실버케어 여성직업교육훈련 확대	174
	2-4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패션기술교육	50
창업·기업 지원	2-5	맘프러너 창업스쿨 등 여성창업 지원	243
	2-6	유관기관 연계 창업 지원 강화	비예산사업
	2-7	SBA 여성기업 지원제도 운영	1,150
	2-8	여성기업인 지식도우미 서비스 제공	비예산사업
	2-9	여성이 행복한 꽃가게 女幸花家	60
	2-10	W-Gold Job 주식회사 설립·운영	비예산사업
계			35,264

넉넉한 서울의 사업수는 16개로, 이중 여성 친화적 문화시설 관련 사업이 5개, 여성 친화적 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이 11개임.

<표 3-7> 넉넉한 서울 세부 사업

세부영역	연번	사업명	예산(백만원)
여성친화 문화프로그램	3-1	창동극장-예술과 함께하는 브런치콘서트	80
	3-2	서울문화예술탐방 여성전용프로그램 운영	200
	3-3	여성가족친화적인 문화예술기회 확대	160
	3-4	여성행복 더하기 '천원의 행복'	36
	3-5	실버들의 아름다운 변신-'행복한 걸(GIRLs) 60+'	502
	3-6	SH 여행 사랑방 운영	86
	3-7	여행 승용차 요일제	비예산사업
여성 교육프로그램	3-8	엄마와 자녀가 함께하는 'Cooking Class'	6
	3-9	여성 평생교육 네트워크	602
여성의 정보화	3-10	인터넷방송 여성을 위한 교양프로그램 제작 운영	'08년 완료
	3-11	시민사이버 정보화교육 확대 운영	'08년 완료
	3-12	여성중심웹가이드라인 마련 및 「아름다운여성」 주제 UCC 공모전	비예산사업
	3-13	맞춤형 여성정보방 홈페이지 구축 운영	'08년 완료
	3-14	여성편의시설 정보마당 구축	타 사업에 포함
계			1,672

안전한 서울의 사업수는 9개로, 이중 여성을 사업대상자로 명시한 사업은 3개이고, 비예산 사업은 5개임. 비예산사업의 경우 사업예산은 있으나,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사업임. 여성친화적 뉴타운 건설사업, 안전을 위한 조경설계기준 및 매뉴얼 제정사업, 무장애 1등급 도시만들기 시범 추진사업, 대기오염정보 SMS 문자서비스 제공사업, 여성을 위한 콜택시 제공사업은 여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하나, 이와 관련해 기존 예산 외에 특별히 예산을 배정하거나 성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임.

<표 3-8> 안전한 서울 세부 사업

세부영역	연번	사업명	예산(백만원)
도시 설계	4-1	여성친화적 뉴타운 건설	비예산사업
	4-2	무장애(Barrier free) 1등급 도시 만들기 시범 추진	비예산사업
	4-3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사업(마곡지구) 시범추진	SH공사 부담
	4-4	안전을 위한 조경설계기준 및 매뉴얼 제정·시행	'08년 완료
도시 안전	4-5	여행 콜택시	비예산사업
	4-6	여성운전자를 위한 찾아가는 정비교실 운영	4
	4-7	외국인 여성쇼핑객을 위한 쇼핑안전가드 운영	20
	4-8	검침원 안심 서비스	27
도시 환경	4-9	육아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기오염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8
여성 건강	4-10	여성건강증진 Plan	1,063
	4-11	여성 결핵환자를 위한 희망 프로젝트	1.5
	4-12	여성폭력피해자 무료진료지원	6
	4-13	폐경기 여성 건강프로젝트	1.5
	4-14	임산부 안심 먹을거리 프로젝트	10
계			1,141

편리한 서울의 사업수는 38개로, 이중 여자화장실 개선사업 같은 시설 개선 관련사업이 17개임. 음식폐기물 배출처리방법 개선, 유모차 개찰구 이용편의 증진, 저상버스 도입 확대, 버스고급화 추진, 엘리베이터 증설 및 대기용 의자 설치 사업의 경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여행 프로젝트 사업이 된 것은 여성의 편리성을 특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임.

<표 3-9> 편리한 서울 세부 사업

세부영역	연번	사업명	예산(백만원)
여성편의시설	5-1	여행 화장실	71,718
	5-2	여행 주차장	202
	5-3	공공시설 내 양육지원시설 설치	5
	5-4	문화시설 등 여성편의시설 개선	40
	5-5	한강시민공원 여성편의시설 개선	65
	5-6	공공시설 유모차 대여서비스 제공	1.4
	5-7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스템 Up-grade	1,100
보도	5-8	여행 길	16,600
공공시설	5-9	여행 공원	9,775
	5-10	여행 Water Park	110,803
	5-11	여행과 함께하는 문정 썬큰가든	SH공사 부담
	5-12	여행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파크	90,910
	5-13	시설관리공단 관리시설 개선	3,064
	5-14	여성이 참여하는 디자인 공모전	100
대중교통	5-15	여행 버스	비예산사업
	5-16	시내버스 및 지하철 전동차 손잡이 개선	비예산사업
	5-17	교통시설물의 여성 등 교통약자 배려사업 추진	추후 결정
	5-18	지하철 여성 보행환경 개선	475
	5-19	유모차 개찰구 이용편의 증진	기타공사비
민간영역 확 대	5-20	여행 아파트	전체공사비
	5-21	백화점·대형마트 여성편의시설 개선	비예산사업
	5-22	주부 프로슈머제도 운영	44
법·제도 개선	5-23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계획 관련규정 보완	292
	5-24	건축물 및 시설물 여성편의시설 개선	비예산사업
	5-25	건축공간 환경개선 통합기준안 시행	비예산사업
	5-26	취득세 신고 여성납세자 지원 서비스	비예산사업
점검 및 평가	5-27	시민 불편살피미 운영 활성화	258
	5-28	여성불편민원 다산패트롤 현장확인 강화	비예산사업
계			305,452

⑵ 추진사업 및 성과

그동안 여행 프로젝트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은 편리한 생활, 안전한 생활, 걷기편한 길, 보육걱정 없는 서울을 들 수 있음.

○편리한 생활

—여성화장실 변기수 465개 확대

—남녀 화장실 변기수 비율 1 : 1 이상

—파우더룸, 기저귀교환대 등 각종 편의시설 1,883개 설치

○안전한 생활

—브랜드콜택시 24,181대 운영, 안심귀가 서비스 여성등록자 6,580명

—지하보차도 방음벽 설치로 소음과 공기오염 차단 17개소, 밝고 안전한 보행을 위한 조명등 개선 및 비상벨 설치 10개소

—여성우선주차구획 공공 2,941면, 민간 2,821면 설치, 안전을 위해 CCTV 및 비상벨 27개소 설치

○걷기편한 길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107개소

—보도정비 13km, 보도턱 낮추기 1,136개소

○보육 걱정 없는 서울

—공공보육시설 45개소 확충

—시간연장 보육시설 90개소 확대

—휴일보육 20개소 확대

—영유아 플라자 5개소 설치완료, 9개소 진행

3) 여행시설 인증

그동안 여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여행시설에 대해 인증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체감도 향상, 사업 현장가시화 및 여행사업의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함. 여행화장실, 여행주차장, 여행길, 여행아파트, 여행공원을 인증 추진 대상으로 함.

여행시설 인증은 우선 인증대상 시설을 추천받아 현장심사단이 이를 평가하고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을 실시하며, 인증이 완료된 시설에는 인증마크를 부착함.

<그림 3-4> 여행시설 인증 추진 절차

평가기준은 시설별 인증 매뉴얼에 따른 평가표를 적용하며, 인증시기는 단계별 인증을 추진함. 1단계는 화장실 및 주차장 88개소에 대한 인증으로 2009년 6월 실시되었으며, 2단계는 화장실 및 주차장, 길, 아파트, 공원 200개소를 대상으로 2009년 10월 실시할 예정임. 여행화장실의 경우 여행시설 인증을 통해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편의용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4) 관련 법규

여행 프로젝트와 여성관련 법규에는 모두 10개 법령 및 조례가 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하면 총 21개에 달함.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음.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5) 여행 프로젝트와 성인지 예산의 관계

여행 프로젝트는 전 실・국과 정책 전반에 걸쳐 여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일반예산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예산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음. 그러나 여행 프로젝트가 여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총예산에서 여성예산이 차지하는데 초점을 둔 성인지 예산 모델의 속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제2절 성인지 예산 행정기반

1. 서울시 예산구조

1) 예산편성기준

⑴ 예산편성기준 개념 및 구성

예산편성기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지방의회 관련 경비,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 균형과 형평성을 제고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재정법」 제38조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예산편성기준은 동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본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이외의 다른 법령에 편성기준 및 경비부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공무원 인건비와 기관운영경비 등은 국가와 지방 간의 연계성과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예산편성지침 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국가예산편성지침에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특성상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사항은 국가예산편성지침에 우선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함.

<표 3-10> 서울시 예산편성기준 구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참고자료	서울시 예산편성지침
- 국가 및 지방재정운용여건 및 방향 - 지방재정제도 - 예산운용 및 실무 • 예산원칙·편성·집행,예비비 -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기준 - 예산편성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반영이 필요한 중앙 각 부처의 시책 -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 국가예산편성기준 • 공공요금, 국외 항공요금, 인쇄비 기준요금,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단가,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 번역료, 감정평가 수수료율, 시설부대경비	- 서울시 예산편성기본방향 - 예산요구지침 • 세입예산요구지침 • 세출예산요구지침 - 예산편성요구양식 ※부록 •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 경비 • 시 인건비 및 기본경비 편성기준 ※ 행안부 편성기준을 토대로 작성

⑵ 관련 근거규정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 시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2조(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의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 및 제41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 구분)

—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감안하여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감안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 13개 분야로 구분

⑶ 예산편성기준 체계

예산편성기준의 반영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로 시달되는데, 이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작성 시 중앙부처 및 시·도의 의견을 수렴

해 반영하기 위한 것임. 예산편성제도분야, 예산편성기준운영분야, 기타 건의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대상 업무로 하는데, 5월 초순 기본계획이 시달되고, 5월 25일경 제출된 의견에 대한 지자체의 종합의견수렴을 거쳐 6월 초순 시·도 예산팀장 회의가 개최되어 종합토의를 함.

<표 3-11> 예산편성 관련 업무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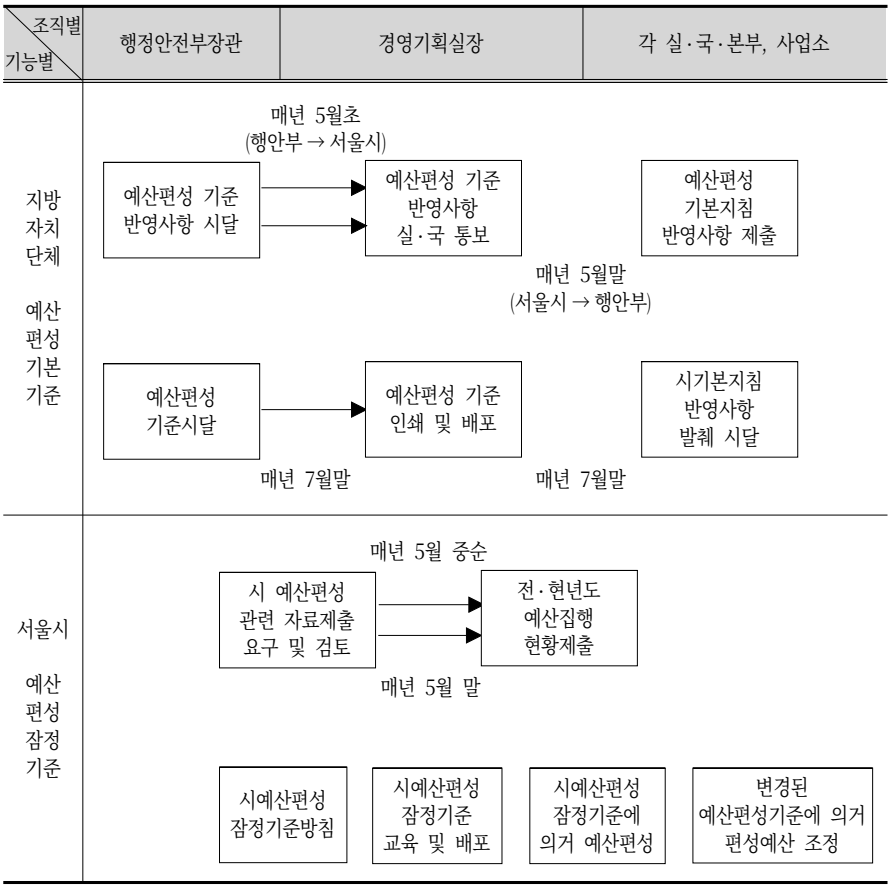

2) 사업예산의 사업구조

⑴ 사업별 예산구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부문과 정책·단위·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음. 이는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를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한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정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되며, 서울시는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사이에 성과목표가 있음. 각 정책사업은 과단위로 구성되는데 정책사업의 하위에는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별로 편성목과 관리목을 편성함. 그리고 가장 아래 항목으로

<표 3-12> 서울시 사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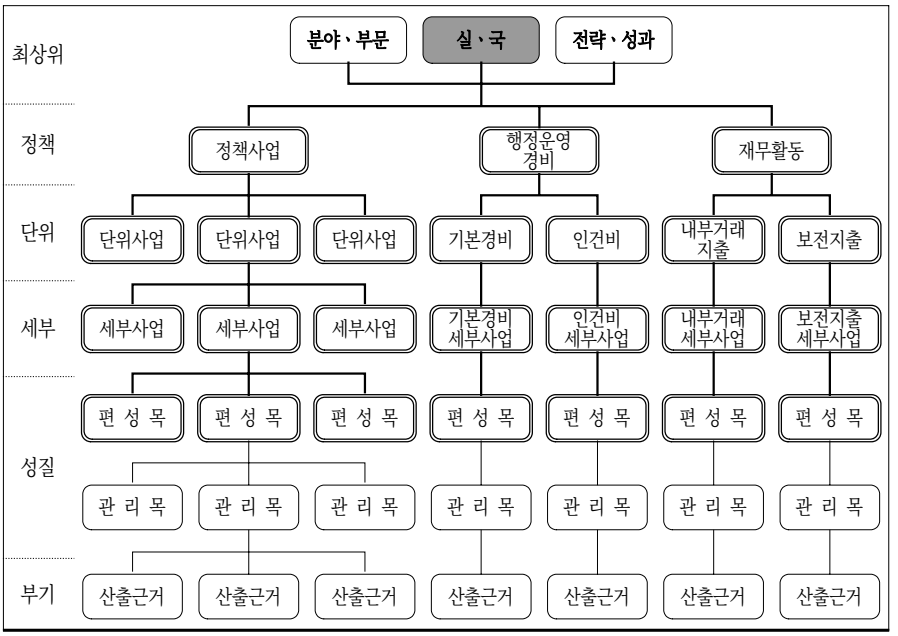

주 : 위 사업구조화 내용중 관리목과 산출근거는 예산서상에 표현되지 않고, 통계 등 목적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관리

관리목 하위에 산출근거가 편성되어 있음.

각 사업은 사업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실・국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조직은 사업별 구조의 상위계층이 아닌 정책사업을 관리하는 책임주체임. 실・국장은 실・국 내의 정책사업의 감독, 조정, 평가를 담당하며, 조직・정책사업・단위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정함. 정책사업은 과 단위로 연계되는데, 과는 1개 이상의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단위사업은 통상 팀 단위와 연계될 수 있으며, 팀은 1개 이상의 단위사업을 수행함 (<표 3-12> 참조).

서울시 복지국을 사례로 들어보면, 담당부서는 복지국 복지정책과이고 첫 번째 정책사업이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일 때 성과목표는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장'이 되고, 그 아래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를 비롯한 여러 단위사업이 각각 있음. 두 번째 정책사업은 일반예산의 행정운영경비로, 성과목표는 일반예산이 됨. 이때 일반예산 하위의 단위는 기본경비와 인건비 등 두 개 항목으로 구성됨. 마지막 세 번째 정책사업은 일반예산의 재무활동으로, 성과목표는 일반예산이며, 단위는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로 이루어짐.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정책 : (취약계층지원)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성과목표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장
단위 :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단위 : …

정책 : (기타)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성과목표 : 일반예산
단위 : (일반회계) 기본경비(복지국 복지정책과)
단위 : (일반회계) 인건비(복지국 복지정책과)

정책 : (취약계층지원) 일반예산(재무활동)
성과목표 : 일반예산
단위 : (일반회계) 내부거래지출(복지국 복지정책과)
단위 : (일반회계) 보전지출(복지국 복지정책과)

⑵ 사업구조 설정 방법

사업구조는 하향식(Top-Down) 사업 편성과 상향식(Bottom-Up) 사업 편성 방법이 있음. 하향식 사업 편성은 각 조직의 존립 근거인 임무에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도출하고 이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순차적으로 편성하는 방법임. 이는 상위개념의 국가정책을 사업을 통해 구체화해가는 과정이 상향식에 비해 논리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 분류 자체에만 초점을 두게 되어 전반적인 성과목표를 등한시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음. 상향식 사업 편성은 세부사업 우선 편성 후, 서로 관련성이 있는 다수의 세부사업을 합하여 단위사업을 편성하고, 마찬가지 요령으로 정책사업을 순차적으로 편성하는 방법임. 이는 하위 사업의 성과목표 수립이 하향식에 비해 보다 용이하고 성과목표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책사업 및 상위 개념의 국가 정책의 성과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음. 일반적으로 실무에 적용할 때는 하향식과 상향식을 절충하여 사업을 편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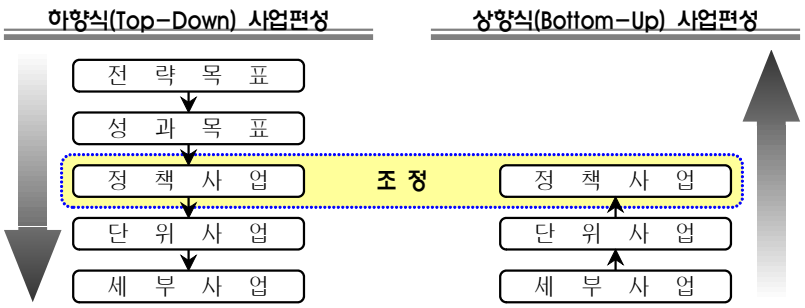

<그림 3-5> 하향식 사업구조와 상향식 사업구조

3) 서울시 여성정책 예산 구조 및 현황

⑴ 여성정책 예산 구조

예산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각 기관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여성가족정책관을 중심으로 여성정책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서울시와 여성가

족정책관은 여성들을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것이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즉,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양성평등의 효과를 갖도록 해야 함.

그러나 여성정책담당부서 이외에 다른 부서에도 여성관련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많으며, 여성정책으로 명명되어 있지 않아도 정책대상이 여성인 사업들이 많음.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예산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이나 아동사업 또는 쓰레기 종량제와 같은 여성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에 예산이 책정된 경우도 있음.

서울시는 전체 31개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여성정책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은 여성가족정책관임. 사업예산은 서울시 예산구조에서 설명하였듯이 부서・정책・단위・세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의 부서인 여성정책담당관에서는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등의 4개 정책을 담당하고 있음. 이중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이라는 정책 밑으로 '여성경제력 강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보호 필요여성의 복지향상'이라는 3개 단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경제력강화' 단위는 '여성발전센터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지역여성인적자원 활성화지원', '여성다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여성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6개의 세부를 가지고 있음(<그림 3-6> 참조).

서울시의 여성정책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 청소년, 저출산 대책, 아동복지의 4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청소년 관련 사업은 여성정책예산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아동관련 예산 역시 일부는 여성정책예산으로 분류하기 애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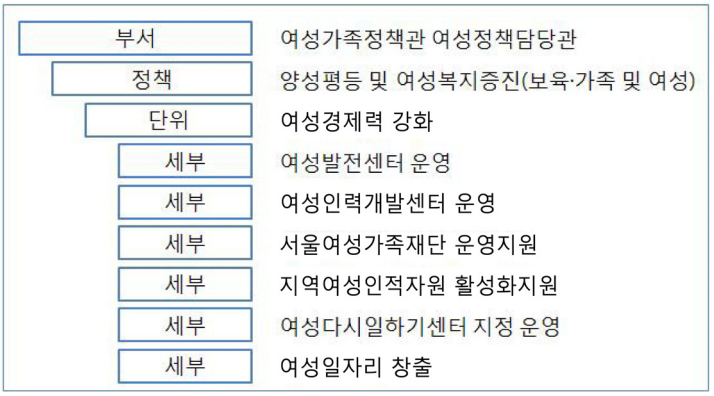

<그림 3-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사업예산명세서 체계

⑵ 여성정책 예산 기본 현황

서울시는 여성정책예산을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국, 문화국 등 3개 부서에서 편성하고 있음.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정책담당관, 가족보육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저출산대책담당관, 여성보호센터, 아동복지센터 등 4담당관 2사업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청소년담당관 외의 모든 부서에서 여성정책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2008년 여성가족정책관의 총예산은 5,642억원으로, 이중 청소년담당관 예산 434억원을 제외한 5,208억원을 여성정책예산으로 볼 수 있음.

<표 3-13>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예산 사례

(단위 : 천원)

기관	세부사업	2007년 예산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담당관	출산, 가족친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30,000	68,000	47,450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378,333	1,345,500	1,156,460
	모자복지시설 운영지원	2,822,742	3,442,868	3,998,829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66,817	1,881,000	336,940
	여성보호센터 운영	761,785	52,714	677,093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670,900	3,008,980	5,550,760
	여성발전기금 조성확대	200,000	3,250,000	3,520,000
	기타	-	-	-

자료 : 「서울시 예산개요」, 각년도.

그 외에 복지국과 문화국의 여성정책예산은 285억원 규모로 나타나 여성가족정책관의 예산과 합한 서울시 여성정책예산은 총 5,493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이는 서울시 전체 예산 13조 3,293억원의 4.12%에 해당하는 규모임.

<표 3-14> 서울시 복지국 여성정책예산 사례

(단위 : 천원)

기관	세부사업	2007년 예산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
복지국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사업	707,851	36,920	-
	시험관시술비 지원	5,117,004	4,493,788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3,242,138	3,296,112	-
	가임기여성 건강검진지원	0	58,350	-
	신생아도우미 지원	-	3,296,112	-
	기타	-	-	-

자료 : 「서울시 예산개요」, 각년도.
주 : 서울시 복지건강국이 2009년 복지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사업이 이전됨.

<표 3-15> 서울시 문화국 여성정책예산 사례

(단위 : 천원)

기관	세부사업	2007년 예산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
문화국 문화예술과	여성축구교실 운영	300,000	550,000	550,000

자료 : 「서울시 예산개요」, 각년도.

⑶ 복지국 예산 구조 및 현황

복지국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 복지과, 자활지원과, 위생과, 식품안전과, 원산지 관리과 등의 7개 과와 보건환경연구원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음. 복지국 예산은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에서 행정운영경비가 0.7%, 재무활동비가 13.4%, 사업비가 85.9%을 차지함. 사업체계는 정책사업 9건, 단위사업 29건, 세부사업 191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복지국 예산사업 중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공중보건위생수준

향상(정책사업)의 화장실 개선(단위사업) 세부사업인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 확충 및 편의개선’사업이 있음. 공중화장실의 경우 성별 이슈가 부각된 대표적 사업임. 공중화장실에 대한 성인지적 이슈가 제기되면서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에 의해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됨. 공중화장실처럼 성별 이슈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성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법으로 제도화된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이 없이도 관련사업이 성인지적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정책(사업)에 대한 성별 이슈가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확산되고 필요한 경우(공중화장실 사례) 성별 이슈가 법으로 제도화가 된다면, 성인지적 예산 편성이 확산될 수 있음. 이런 점에서 정책(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활성화되어야 성인지 예산 편성 가능성도 커짐.

<표 3-16> 복지국 예산사업 체계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예산	세부사업수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시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1,282,806	2개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8개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6개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3개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1개
공중보건위생수준향상	화장실 개선	1,806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운영지원	311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 확충 및 편의개선	1,130	

자료 : 2009, 성과주의 예산개요

복지국 목표달성 지표는 7개로, 이중 성별 수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장애인수, 치매노인서비스 제공률, 자활공동체 확충 등 3개임.

<표 3-17> 복지국 목표달성 지표

목 표	단 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발굴 및 부적격자 조치율	%
사회복지시설업무의 전자화 추진	%
푸드뱅크·마켓 기부실적	억원
치매노인서비스 제공률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장애인수	명
시민다소비식품 수거건수	건
자활공동체 확충	개소

이중 달성지표가 사람 수로 제시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장애인수'의 경우 사업대상자, 즉 모집단의 성별 분리통계와 실제 사업 수혜자의 성별 분리가 가능한 지표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을 받은 사람은 7,138명(2007년 5월-2009년 8월)으로, 이중 남성 비율은 60.2%, 여성비율은 39.8%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임. 서울시에 등록된 1급 장애인 수(2009년 6월말 기준)는 37,718명으로, 이중 남성은 59.5%%, 여성은 40.5%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수혜자 모집단과 실제 수혜자의 성별 비율을 확인할 수 있어 서비스 수혜의 성별 평등성 점검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업임.

목표달성지표의 하나인 '치매노인서비스 제공률'의 경우 지표 목표치는 %로 설정되어 있으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임. 치매노인서비스 제공률을 지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모집단에 대한 자료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 사업도 모집단 성별 비율과 수혜자 성별 비율을 파악할 수 있어 서비스 수혜의 성별 평등성 점검이 가능한 사업에 속함.

'자활공동체 확충'의 경우, 자활공동체 개소가 지표 목표치로 되어 있으나, 참가자의 성별 구분이 가능한 지표임. 자활공동체 확충 사업은 사업대상의 모집단 파악은 어려우나, 사업 수혜자의 성별 구분은 가능한 사업임. 2007년 서울시 자활공동체조사에 의하면 자활공동체 참여자(박은철, 저소득층 자활공동체 활성화 방안, 2007)의 74.4%가 여성임.

⑷ 문화국 예산구조 및 현황

7개 정책사업 중에서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과 시민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이 성별 수혜 현황 파악이 가능함. 이중 스포츠 정책은 성별이슈가 자주 제기되는 정책분야임. 또한 여학생과 여성의 스포츠 참여율이 낮고, 정책 수혜자의 성별 차이가 나며, 성별 1인당 지원예산 격차 가능성도 있는 정책 분야임. 이런 점 때문에 스포츠 정책사업은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자주 선정됨. 스포츠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여학생과 여성을 위한 스포츠 참여 및 지원계획,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함. 결론적으로 스포츠 정책은 성인지 예산 편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타 정책사업에 비해 성인지 예산 편성이 용이한 정책분야임.

2. 서울시 성인지 예산 수행을 위한 행정기반

1) 성인지 예산 인식 현황

정책의 수립・집행・평가자인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이 성인지 능력의 향상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관점과 직무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 추진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공무원 대상의 성인지 능력 향상교육은 모든 정책분야에서 정책수요자인 여성의 의식, 요구 및 경험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정책 개발 및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특히 여성 등 시민들이 도시생활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여성정책인 여행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공무원의 성인지 능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음. 교육대상은 25개 자치구의 5~9급 공무원이며,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통해 구청별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을 실시함. 자체교육은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되며, 위탁교육은 구청에서 부담함.

2) 공무원 교육 현황

2008년도에 서울시인재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이수한 서울시 공무원은 총 3,801명임. 이중 여성가족재단에서 교육받은 인원은 전체의 61.0%인 2,320명으로, 이는 서울시 총 자치구 공무원 30,482명의 12.5%에 해당함.

2008년도에 실시된 교육과정은 '성인지정책형성과정', '성별영향평가과정', '성인지예산과정', '성인지통계과정', '여행리더양성과정' 등 6개 과목임.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환경, 진행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 교육과정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3.99였으며, 하위프로그램 만족도는 평균 4.02, 교육과정을 추천할 의향은 4.14, 성인지력 변화도는 +0.48로 나타남.

이를 바탕으로 2009년 1월 28일부터 2월 18일까지 25개 자치구의 총무과와 여성정책팀을 대상으로 2009년도 교육수요를 조사한 결과, 강남구, 강북구, 서초구, 종로구, 중랑구, 구로구를 제외한 총 19개 구에서 응답을 받았으며, 총 교육수요는 2,628명이었음.

과정별로는 성별영향평가과정이 712명으로 전체의 26%에 달해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으며, 성인지력향상과정 664명(25%), 성인지예산과정 495명(19%) 순으로 나타나 2010년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3-18> 성인지 예산제도 교육 수요(2009)

(단위 : 명)

과정	성인지력 향상	젠더 파트너십	성별 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여행	합계
합계	664	395	712	495	145	200	2,628

제3절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그림 3-7>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성인지 예산제도의 큰 의의는 무엇보다 성평등 정책의 실현이라는데 있음.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젠더 관점을 고려한 예산 분배로,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사회적 기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자원이 성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정부 정책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각기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성불평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임.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성평등에 대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 중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행만으로는 실질적인 성인지 예산이 이루어지기 힘든 측면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와 그 아래 각 구를 중심으로 한 근거리 행정을 통해 실제 시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높이고, 실제적인 시민들의 경제적・사회적인 정책 참여 및 기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통해 성 평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정부의 성인지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성평등 정책을 기반으로 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서울시는 현재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문화국 등의 부서를 통해 여성정책예산을 편성하고 수행 중임. 예산 규모는 서울시 전체 예산의 약 4%에 달

하는 규모이며, 그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임. 그러나 대부분 출산과 양육 등의 보육환경 개선에 투자되고 있으며, 이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평등 예산이라 보기 힘듦.

따라서 서울시의 예산구조 상에는 성인지적 관점이 아직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예산도입 역시 고려되지 않은 상황임. 2010년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서 제출에 맞추어 타 지자체에서도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성별영향분석 사업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도 이를 위한 성별영향분석 사업 및 양성평등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서울시에서는 2009년 여성가족재단에서 추진하는 "생활권단위 자전거 친화타운 조성사업"과 서울시 실·국·본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사업", "잠실종합운동장 청소년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 "청년일자리사업(행정인턴 프로그램 운영)", "자활공동체 소규모 창업 지원사업", "주차장 시설개선(시설운영)사업", "강북대형공원 조성공사" 등 7개의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선정하여 시범실시하고 있음.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이 7개 사업의 성별영향 분석을 벤치마킹하면 서울시의 타 사업들의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데 보다 유리할 것임. 또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서울숲 조성 및 운영정책", "서울시 관광종사인력 양성정책", "장애인 고용정책" 등 성별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등 젠더 관점의 도입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및 인재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역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의 5~9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정책형성과정', '성별영향평가과정', '성인지예산과정', '성인지통계과정', '여행리더양성과정' 등의 교육이 2008년과 2009년 현재 진행되고 있음. 이는 중앙정부의 2010년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에 맞춘 것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구 단위에서도 성인지 예

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보여줌.

일부 서울시 추진 사업에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도입되거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여성 관련 정책 중 성인지적 관점에 가장 근접한 것은 "여행 프로젝트"임. 서울시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할 경우, 여행 프로젝트와 접목시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점차 이를 다른 부서, 다른 사업으로 확대시켜 나가 향후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전 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그림 3-8>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현황

2.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지적 관점은 매우 부족한 상태로, 이를 수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에 대한 적용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행할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할 경우 그에 따르는 상승효과가 큰 것도 사실임.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 양성평등의 목표가 실현될 것으로 보임. 이는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취지와 같은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간으로 하는 여성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임. 그러나 현재 지자체의 여성정책 예산

운용을 볼 때 유아복지, 아동복지, 보호소운영 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 같은 예산 집행은 여성정책이 목표로 내세우는 남녀평등이란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우며, 지자체 예산의 성평등 효과 분석에 따른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중앙정부의 여성정책은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후 5년마다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음. 최근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년)에 따르면, 남녀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핵심정책과제와 115개 세부정책과제가 채택되었으며,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한 별도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국가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라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맞추어 지역 주민의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됨.

둘째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 단위의 실무 행정 추진으로 시민에게 미치는 편익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커질 것임. 국가재정법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줌으로써,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에서 수행할 때 나타나는 행정적인 불편함과 업무 수행의 불명확성을 해결할 수 있음.

또한 여행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여성정책이 실현될 것으로 보임. 국내 여성정책들은 주로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하달하는 잔여 정책들의 수행 정도만 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여행 프로젝트와 여성정책의 결합으로 중앙정부의 여성정책 기조 하에, 여성관점과 지역적 특수성을 보강한 여성정책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여행 프로젝트는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단순 이념이 아닌, 여성이 행복할 수 있는 여성정책이라는 큰 틀 아래서 실재적으로 여성에게 돌아올 수 있는 혜택 그 자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아이디어 활용과 직접적인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임. 이로 인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 및 수행하는 단순 기능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함께 정책의 개발 및 수립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서의 밑바탕이 되는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는 지역인지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여성들의 현실과 요구를 수렴하고 분석하는 것을 필요로 함. 따라서 지자체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한다면 구 단위의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비롯하여 지역적, 현실적인 여성정책의 도입으로 지역 여성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4장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방안

제1절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제2절 단계별 시행 방안

제4장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방안

제1절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기본방향

1) 추진 목적

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은 여성정책의 기조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성 주류화 전략은 성관점(gender perspective)을 확립하는 것으로, 각종 여성관련 정책에서 성관점에 입각한 예산의 실행이 요구됨. 예산의 실행은 사업별로 차이를 보이며, 특히 지역 주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는 필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책임. 성인지 예산을 도입한 스웨덴 등 유럽 각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서울시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실행 능력을 진단한 결과,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국, 문화국의 3개 부서에 서울시 여성정책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및 각 실・국・본부 내 일부 사업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비롯한 서울시 인재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

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자치구 공무원의 12.5%인 3,801명이 이를 이수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성인지 예산제도 발전 5단계 중 2~3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서울시 주도의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을 통해 제도적 추진근거를 갖추고 부처별 부분실시 후 최종적으로 5단계 전면실시로 확대하고자 함.

서울시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 정책에 기초를 두고, 중앙정부에서 시작된 성인지 예산제도가 서울특별시를 거쳐 각 자치구까지 연동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함.

2) 추진 범위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명시되어 있음. 서울시의 경우 '여성발전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여성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등이 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 지자체는 드묾. 따라서 제도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역시 법적, 제도적인 근거를 갖추어 명문화해야 함. 둘째, 성별분리통계 및 성별영향분석을 통한 여성관련 예산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셋째, 서울시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이를 통해 서울시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틀 아래에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의 방안을 제시해야 함.

2.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전략

1)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성인지 예산의 기초가 되는 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의 작성뿐만 아니라, 성별 통계 자료의 구축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중요사업임. 서울시의 성인지 예산제도 실행 능력을 진단하기 위해 각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가족정책관 및 복지국, 문화국 등 3개 부서에 서울시 여성정책예산이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음. 또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및 각 실・국・본부 내의 일부 사업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인재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양성평등교육 과정은 '성인지정책형성과정', '성별영향평가과정', '성인지예산과정', '성인지통계과정', '여행리더양성과정' 등 총 6개 과목이었으며, 총 자치구 공무원 수의 12.5%인 3,801명이 이를 이수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성인지 예산제도 발전 5단계 중 2단계에서 3단계에 해당하며, 현재까지는 여성가족정책관의 주도 하에 소극적으로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는 서울시 사업 내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지 예산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임. 향후 서울시 주도의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으로, 제도적 추진근거를 갖추고 공무원들의 꾸준한 성인지 교육을 통해 부서별 부분실시를 거쳐 5단계 전면실시로 확대해 나가야 함.

2) 여행 프로젝트와 성인지 예산 연계

여행 프로젝트의 목적은 지금까지의 양성평등을 넘어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도시정책 전반에 반영하여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안・불편요소를 없애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여성친화적인 사회・문화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여

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구축하는 데 있음. 이는 서울시 여성정책 중 성인지 예산이 추구하는 근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서울시는 성인지 예산제도 발전단계 중 2~3단계에 해당되며,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인식 및 교육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시행할 기반은 아직 부족한 상태임. 성인지 예산의 본질과 사업 성격이 가장 유사한 여행 프로젝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중심으로 각종 양성평등 정책 및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함.

3) 조례 제정

⑴ 조례 근거

서울시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성발전기본조례 또는 지방재정법 상에서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 그러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이 보장되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상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여성발전조례에 성인지 예산 조례를 추가하여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이를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며,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서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함.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동된 서울시 시스템을 활용하여 성인지 예산제도를 추진해야 함. 따라서 예산담당관과 협조하여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예산지침에 성인지 예산을 반영하여 이를 각 실·국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나, 지방재정법은 전국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시만 단독으로 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⑵ 지방재정법의 성인지 예산제도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 제16조, 26조, 34조, 57조, 58조 등에서 규정된 바 있으나, 지방재정법 상에서는 아직 포함되지 않음. 국가재정법은 중앙국가기관이 적용 대상이지만, 지방재정법은 중앙국가기관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적용 대상이 됨. 따라서 국가재정법 상의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작성 및 집행 의무는 중앙정부에서만 통용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상에 이와 유사한 성인지 예산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야 함.

지방재정법 상에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새로 추가될 경우, 이를 명문화하는 시행령에 '성인지적 성과지표 개발 및 활용', '성별분리통계・정보의 구축 및 활용' 등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한 신규 조항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함. 이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들어가는 내용임.

⑶ 지방조례 제정

지방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자치법규로, 지방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 후 지방조례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함. 지방조례는 행정상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음. 서울시에서 성인지 예산을 추가한다면, 다음 표와 같은 조례 규정이 필요할 것임.

<표 4-1> 서울시 성인지 예산조례 규정 사례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성평등 정책의 수립 및 평가)
제4조(성평등을 위한 행정의 의무)
제5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6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7조(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평가)
제8조(관련 기구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제9조(주민의 참여)
제10조(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위원회)
제11조(기초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 실시후원)
제12조(벌칙)
보칙

4) 기반조성

⑴ 성별영향평가 사전 시행

성별영향분석은 남성과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프로그램, 법률의 효율성과 차별적인 요소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조건과 이해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정책형성과 분석평가의 방법임. 중앙정부의 국가재정법은 성인지 예산을 일반예산에 대한 성별분석으로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이 성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에서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전에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추려내고,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⑵ 성별분리통계 자료 구축

성별분리통계는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성 분리 정보의 중요성과 구체적 내용이 부각되면서 성인지 예산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이 되어옴. 국내에서는 한국여성개발원이 1994년부터 「여성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성별 통계를 수록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 1997년부터 매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간하고 있음. 국내 최초로 성 인지적 관점에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것은 1999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발간한 「성 인지적 통계자료 구축」으로, 통계생산부처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부처별 보완사항이 제시되어 있음.

성인지 예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녀로 구분된 통계치를 통해 현 상태에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성별분리통계는 서울시 내의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상태를 통계화하여, 성 분리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이를 통해 서울시의 양성평등 정책의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⑶ 성인지 성과관리

국가재정법에서는 성인지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예산안 및 결산안과 함께 중앙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국가 성과관리지표를 따르는 성과계획서를 포함해야 함. 성과계획서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체계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⑷ 공무원 교육

성인지 예산의 시행은 기존 예산서에 성인지 예산에 관한 항목이 추가되는 것이므로, 성인지 예산을 담당하는 새로운 인력의 투입 없이 기존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임. 따라서 일선에서 직접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동의 없이는 성인지 예산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힘듦.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는 선진국 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교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임. 성인지 예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중요함.

또한 성별분리통계는 지역, 연령, 계층 등 다양한 성별에 영향을 주는 기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며, 이를 다양한 통계분석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공무원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결정을 내리고 자료의 수집 및 조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 도입 전부터 담당 공무원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

3.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체계

1) 거버넌스 체계

앞서 성인지 예산의 거버넌스 유형으로 정부주도형, 시민사회주도형, 원조기구와 정부의 파트너십의 세 가지를 살펴봄. 이 세 가지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는 주체들은 행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집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이 성인지 예산제도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게 됨.

서울시의 경우 거버넌스를 이루는 주체에는 각각 하위 기관들이 실행주체로 존재하며 이들은 각자 파트너십이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됨. 네트워크 유형은 서울시 실·국·본부 간의 파트너십인 '내부 파트너십'과 서울시와 중앙부처, 서울시 의회, 시민사회, 전문가집단 간의 파트너십인 '외부 파트너십'으로 구성됨.

서울시에서 성인지 예산을 실행할 경우 서울시 실·국·본부가 중심이 되어 전문가집단, 시민사회, 서울시 의회와 네트워크를 갖게 되며, 행정부의 기획재정부 및 여성부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하게 됨. <그림 4-1>은 각 주체 간의 관계 모형을 보여주고 있음. 각 기관은 모두 상호 연계를 맺고 있으나 특히 서울시는 시민사회 및 전문가집단과 강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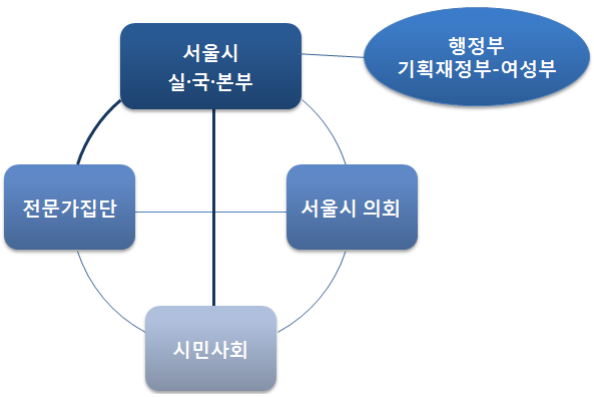

<그림 4-1> 주체 간 파트너십 관계

2) 운영 체계

서울시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상에 근거를 두며,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행은 서울시 예산담당관이 담당함. 예산담당관에서 서울시 예산지침에

성인지 예산을 반영하면 이 지침이 서울시 각 실·국에 하달됨. 이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 관련 업무를 보조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행에 정책적, 제도적인 보완이 가능하게 함.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개발과 실행을 담당하는 부서로, 성인지력 향상 및 여성가족 친화적인 문화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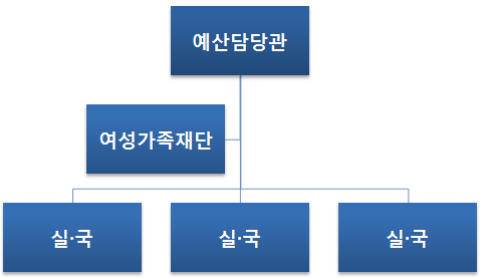

<그림 4-2>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체계

다른 주요 연계 기관으로는 서울시의 여성정책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하여, 중앙정부의 기획재정부 및 여성부 등의 행정부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주체이고, 성인지 예산운용 목표를 담당하며, 여성부는 양성평등정책목표를 담당하는 기관임. 양성평등정책목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비전－전략목표－정책과제의 위계적 목표체계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음.

제2절 단계별 시행 방안

1. 성인지 예산서 도입 준비

1) 시범부서 선정 방안

성인지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준비 단계에서는 성인지적 접근이 보다 쉬운 부서나 사업을 선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임. 이를 위해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많은 부서나 여행 프로젝트 추진 부서, 또는 여성가족정책관 및 복지국, 문화국과 같이 성인지 예산 작성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 위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평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던 부서 위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함.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그동안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심을 갖고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부서일수록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기 때문임.

그 외에는 시민단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부서 내의 결속력이 강하고 실행력을 갖춘 부서 또는 부서 내 책임자가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심을 두고 추진력 있게 실행해나갈 수 있는 부서 등을 꼽을 수 있음.

2) 대상사업 선정 방안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기 전, 어떤 부서의 어떤 사업이 성인지 예산을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할 필요가 있음. 우선적으로 기존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음. 새로이 통계자료를 구축할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임. 사업이 결정되면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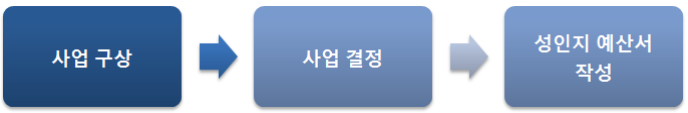

<그림 4-3>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

3)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과정

서울시가 효율성 있게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자료를 구축하고, 성인지 예산을 실시할 부서와 사업을 선정하여 시범실시한 이후 점차 해당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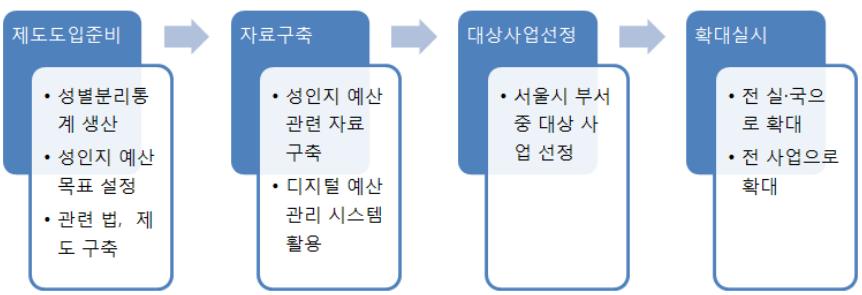

<그림 4-4> 성인지 예산 도입 과정

도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시 각 실·국에서 실시하는 세부사업 중 성별 구분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그 후 세부사업, 단위사업별로 성별분리통계 자료를 구축하여, 성별 격차를 확인함. 성별 격차에 대한 확인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의 목표를 설정하여 세부사업별로 이를 반영함.

<표 4-2> 단계별 도입 환경 조성 방안

단계	내 용
1단계	성별 구분이 가능한 사업 구상
2단계	성별분리통계 생산
3단계	성별 격차 확인
4단계	성인지 예산 목표 설정

2.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른 성인지 예산

1) 연도별 추진 단계

중앙정부는 2010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함. 서울시가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단계를 거쳐 2011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단계별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음.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첫째 단계별 원칙과 목표를 정하고, 둘째 이에 따른 시간별 계획을 세워야 함. 앞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단계별 추진 전략은 크게 5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사업 추진시의 단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1단계 도입기는 2011~2012년의 2년간에 걸친 시범적용 수준 단계로, 초기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자료의 분석 능력을 함양하여 제도의 정착에 초점을 맞추는 단계임. 2단계 정착기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정착 단계로,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분석역량을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을 일반에까지 확산하여 제도의 정상적인 정착을 이루는 단계임. 마지막 3단계 성숙기는 2018년 이후의 중장기, 고도화 단계로, 성인지적 관점을 예산과정 전체에 도입하여 고도화하고, 고도의 분석 능력을 갖추는 단계임.

<그림 4-5> 서울시 성인지 예산 연도별 추진 단계

2) 단계별 추진 방안

단계별로 적용되는 원칙에는 '행정비용 최소화 원칙'과 '제도 본연의 목적달성 원칙'의 두 가지가 있음. 행정비용 최소화 원칙이란 성인지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추가 업무량을 최소화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공무원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하며, 제도 본연의 목적달성 원칙이란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과정이 제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할 여지가 있기에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적용되는 원칙을 의미함. 1단계에서는 공무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비용 최소화 원칙만을 설정하며, 2단계에서는 이와 함께 제도 본연의 목적달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성숙기인 3단계에서는 제도 본연의 목적달성 원칙이 강조되어야 함.

단계별 목표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시범적용 수준이므로 제도의 정착에 초점을 맞추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 확대 및 분석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함. 2단계에서는 일반화 수준에 도달해 제도가 정상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 전체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분석역량을 제고함. 3단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성인지 예산이 예산 전 과정에 통합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까지 인식을 확산시키며, 고도의 분석능력을 갖추도록 함.

<표 4-3>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단계별 접근모형

시 기		원칙 및 목표	추진체계	실행방안
1단계 : 도입기	2011 ~2012 (2년)	○행정비용 최소화 원칙 ○시범적용 수준 - 제도정착에 초점 - 인식의 확대 - 분석 능력 함양	구체적 실행대안 제시	구체적 실행대안 제시
2단계 : 정착기	2013 ~2017 (5년)	○행정비용 최소화_제도 본연의 목적달성 원칙 ○일반화 수준 - 제도의 정상적 정착 - 인식의 확산 - 분석역량 제고	-	-
3단계 : 성숙기	2018~ (중장기)	○제도 본연의 목적달성 원칙 ○고도화 수준 - 예산 전 과정에의 통합 - 인식의 일상화 - 고도의 분석능력	-	-

자료 : 윤영진 외, 2008,「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체계와 실행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5장 서울시 성인지 예산 작성 사례

제1절 서울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및 가이드라인
제2절 서울시 성인지 예산서 적용 사례

제5장 서울시 성인지 예산 작성 사례

제1절 서울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및 가이드라인

1. 기본 방향

서울시의 성인지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전에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현재 서울시에는 일반예산이 성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판단할 근거 자료가 부족함. 따라서 서울시의 예산 구성 요소 중 성평등에 영향을 주는 예산들이 어떤 것인지 먼저 파악해 둘 필요가 있음.

이는 실질적으로 성평등을 추구하는 방법이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별 영향의 고려가 이루어져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음. 또한 중앙정부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책방향과 중앙정부와의 효과적 연계, 성별분리통계, 성인지 예산의 성과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서울시의 성인지 예산서에는 서울시의 현 상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일반예산의 사전적 성별영향평가의 반영, 성인지 성과관리,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 등을 포함해야 함. 예산서의 기본방향은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성인지 예산 분석기법 개발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를 참조로 함.

2. 작성 양식

1) 작성 항목 유형

서울시의 성인지 예산서의 주요 내용은 예산편성의 배경, 성인지 예산 운용의 목표, 성인지 예산의 개요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할 것임. 일반적으로 예산서는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개요, 각목명세서, 사업설명자료 등 부속서류를 포함하고 있음. 정부 예산서와 동일한 유형일 필요는 없으나 국가 재정운용과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예산서도 어느 정도 일관된 형식적 요건을 따라야 함. 일반적으로 성인지 예산서의 유형은 크게 양적 집계, 부처별 분석, 부문 간 분석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표 5-1>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 매뉴얼 내용

Ⅰ. 성인지 예산제도 개요
- 성인지 예산의 정의와 필요성
-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과정
- 성인지 예산의 법적 근거
- 성인지 예산서 및 예산분석의 의의

Ⅱ.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

Ⅲ.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방법
- 성인지 예산서 양식
-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방법
- 성인지 예산서 작성 사례

부록1. 성인지적 예산분석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부록2. 부처별 성인지적 분석 대상 예산 사업 목록
부록3. Q&A

2) 작성 양식 사례

서울시 예산서는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됨. 따라서 성인지 예산서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임. 예산개요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는 부처별, 국가정책목표별, 분야별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부서별, 사업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서울시 성인지 예산서는 사업별, 실・국별로 작성되며, 크게 성인지 정책 현황, 사업총괄표, 성인지 예산 사업 설명서 등을 포함하고

<표 5-2>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 기본

OO실

I. 성인지 정책 현황
1. 성인지 정책 목표 및 재정운용 방향
2. 성인지 정책 추진 현황 및 재정운용 추이

구분	2009예산(A)	2010예산(B)	증감(B-A)	증감률(%)	세부사업 개수
양성평등정책사업	억원	억원			
성별영향분석사업	억원	억원			
OO실 예산	억원	억원			

II. 사업총괄표

III. 성인지 예산 사업 설명서
1. 양성평등예산사업(사업목적, 정책대상, 사업내용, 추진실적 및 성과, 세부내역, 기대효과)
2. 성별영향분석사업(사업목적, 정책대상, 사업내용, 추진실적 및 성과, 세부내역, 기대효과, 성별영향분석)
   1) 성별 수혜 분석(예산사업에 대한 성별통계를 생산하는 경우는 성별통계 제시, 아니면 사유 기재)
   2) 수혜의 성별 편차 원인 분석(수혜의 성별 편차를 가져온 제도상의 원인, 현실적 여건 구체적 기술)
   3) 수혜의 성별 편차 해결을 위한 대안(예산 및 제도개선 반영 사항)
   4) 성평등 목표 설정(1)~3)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치(비율, 만족도) 설정, 아니면 사유 기재)

있음. 예산서의 주요 내용은 성인지 정책현황, 양성평등 예산 사업, 일반예산 분석, 성인지 예산사업 설명서 등임(<표 5-2> 참조).

성인지 정책현황과 관련된 예산서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 부서가 표시되어 있으며, 성인지 정책목표와 성인지 정책추진 현황 및 재정운용 추이, 다음연도 성인지 정책 및 재정운용 방향을 포함함. 이를 기입할 때 그 부서가 추진한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지난 4년간의 세부사업명, 예산액, 건수를 함께 기재함.

<표 5-3>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 정책현황

부서 :

I. 성인지 정책 현황

1. 성인지 정책 목표
2. 성인지 정책 추진 현황 및 재정운용 추이
   ○
   ○
   ○
   -
   -
   -

구 분	2009예산(A)	2010예산(B)	증감(B-A)	증감률(%)	세부사업 개수
양성평등정책사업	억원	억원			
성별영향분석사업	억원	억원			
OO실 예산	억원	억원			

3. 2010 성인지 정책 및 재정운용 방향

- 성별영향평가

연도	세부사업명	예산	건수
2006			
2007			
2008			
2009			

양성평등 예산사업은 양성평등 사업의 목록과 사업 설명 자료를 포함함. 양성평등사업의 목록은 당해 회계연도 서울시 전체의 세부사업 중에서 양성평등

사업을 선별하여 해당 사업의 지난 3년간의 예산을 비교할 수 있고, 당해 연도의 성평등 예산과 그 다음 해의 성평등 예산의 증감추이를 비교할 수 있게 함. 또한 양성평등사업의 사업설명 자료를 제시하여, 세부사업별 사업명과 그 사업의 목적, 개요,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사업내용을 기술함.

<표 5-4>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 양성평등 예산사업

II. 양성평등 예산사업

1. 목록

회계	세부사업	2006 예산	2007 예산(A)	2008 예산요구	2008 예산검토(B)	증감 (B-A)	%

2. 사업 설명자료

1. 세부사업명 :

부서 - 정책 - 단위

□ 사업목적 :
□ 사업개요 :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 사업내용 :

성인지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양성평등사업과 일반예산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함. 양성평등사업과 관련된 설명을 포함할 때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을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함. 일반예산 분석은 분석대상 사업 목록, 사업별 분석 결과 미 예산반영사항을 포함함.

<표 5-5>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 일반예산 분석

III. 일반예산 분석

1. 분석대상 사업 목록

회계	세부사업	2006 예산	2007 예산(A)	2008 예산요구	2008 예산검토(B)	증감 (B-A)	%

2. 분석결과 및 예산 반영사항

1. 세부사업명 :

부서 - 정책 - 단위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예산규모
□ 사업규모 :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 사업내용 :

3. 2008년도 예산분석 및 2010년도 예산 반영사항
□ 성불평등 문제 파악 :

제2절 서울시 성인지 예산서 적용 사례

1. 성인지 예산제도 분석 사업

1) 복지국「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⑴ 개요

－사업 시작연도 : 2007년

－사업기간 : 2009년 2월 1일～2010년 1월 31일

－예산구조 : 국비 50%, 시비 50%

－집행부서 : 서울시 복지국
－사업목적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연령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
－대상자 선정・절차 : 장애인 본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연중) 보건소에서 '인정조사표'에 따라 방문조사하고, 구(區)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인정등급 및 제공시간 결정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는 지원 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함. 별도의 계약이 없으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① 신변처리 지원 : 목욕, 대소변, 옷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②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③ 일상생활 지원 :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④ 커뮤니케이션 보조 : 낭독보조, 대필 보조 등
⑤ 이동의 보조 : 안내도우미・대리운전지원(시각장애인), 학교 등・하교 지원, 직장 출・퇴근 지원, 야외・문화활동 지원 등
－서비스 단가 : 시간당 8,000원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 120%범위 내 월 2만원, 차상위 120% 초과 월 4만원(최저생계비 120% 이내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 기준)
－사업기관(활동보조인 파견기관으로 제공기관과 동일함) : 2009년 4월말

현재 66개소 운영. 사업경험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자활센터 우선 지정운영

- 활동보조인 자격 및 모집 : 활동보조인은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며, 제공기관에서 연중 수시로 모집
  ※ 활동보조인은 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60시간)을 이수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보수교육(20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기관 : 국립재활원 등 5개 기관이 운영표준교육안 및 교재를 개발·보급하여 양질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함. 활동보조인은 이론 40시간 및 실기 20시간 등 총 60시간을 이수하고, 다음연도부터는 보수교육(20시간)을 받아야 함.
-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 :
  ①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제출
  ② 서비스 대상 선정 시 새올시스템을 통해 관리센터를 거쳐 전담 금융기관(KB 국민은행)으로 관련 자료 전송(구청 → 관리센터 → 금융기관)
  ③ 전담 금융기관에서 지정 계좌가 명시된 카드 발급 및 서비스 대상자에게 발송(지정계좌는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한 계좌로 카드 결제 계좌와는 다름)
  ④ 카드배송은 국민은행에서 담당하며 전송 후 7~10일 정도 소요
  ⑤ 서비스 대상자는 은행 지정계좌에 본인부담금 입금
- 바우처 카드의 종류 : KB 신용카드, KB 체크카드, 바우처 전용카드
- 카드 재발급신청 :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 전화신청 : 국민은행 콜센터(1599-7900) 상담원에게 신청

⑵ 이용자 현황

－총 대상자수 : 7,138명(2007년 5월 1일 ~ 2009년 8월 31일)

－총 지원금액 : 48,093,241,725원

－장애등급별 이용자 현황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표 5-6> 서울특별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연령별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총합계	10대	1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용자수	7,138	1,952	639	851	785	1,041	1,173	697
구성비	100.0	27.3	9.0	11.9	11.0	14.6	16.4	9.8

<표 5-7> 서울특별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성별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총합계	남	여
이용자수	7,138	4,297	2,841
구성비	100.0	60.2	39.8

⑶ 시사점

목표달성지표 중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장애인수, 치매노인서비스 제공률, 자활공동체 확충의 경우, 정책대상 모집단의 성별 자료와 사업수혜자 성별 자료를 제시함.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치매노인서비스 제공사업의 경우, 여성 친화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가정에서 장애아나 노인을 돌보는 사람은 주로 여성임. 이 사업들이 여성만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가정 내 돌봄 노동을 주로 전담하는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성 친화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한편 가정 내 돌봄 노동을 사회화하는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에 여성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 친화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2]. 이 사업들의 예

2) 가사, 간병, 보육 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해 저임금의 성별 분리 직종이라는 문제제기가

산이 매년 증가하여 수혜자수가 늘어난다면 특히 여성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경제활동참여율)이 커질 것이며, 반면 예산이 삭감된다면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더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임. 이런 사업유형은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 단기(매년), 중장기적으로 성인지 예산 분석 및 편성이 가능함.

수혜자의 성별 파악이 가능한 세부사업별로 성별 자료를 제시하고, 사업에 따라 예산 집행 주체는 각각 서울시, 자치구, 복지시설・기관이 될 수 있음. 서울시 복지국에서 사업과 관련해 성별 이슈를 파악하고 자치구나 복지시설・기관에 사업대상과 성별 수혜자 자료를 요청함. 복지국에서 자료에 기반하여 성인지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기관에게 성인지 예산집행 지침을 전달함.

2) 문화국「스포츠바우처」사업

⑴ 개요

－사업 시작연도 : 2009년 신규 사업

－예산구조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집행부서 : 서울시 문화국

－사업내용 : 강좌 및 용품제공

－강좌이용 20,983명, 용품이용 451명 등 총 21,434명 혜택

－강좌내용 : 태권도, 수영, 테니스, 축구, 배구, 탁구, 유도, 검도, 빙상, 배드민턴, 볼링, 스쿼시, 헬스, 에어로빅

※ 생활체육교실 중 영어, 음악, 서예, 한자, 풍물, 바둑 등 문화강좌 제한

⑵ 시사점

문화국은 전략목표 7건, 성과목표 16건, 정책사업 7건, 단위사업 32건, 세부사업 245건으로 구성된 총 245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대인대상사업으로

있기는 하나, 공공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치매노인 지원과 같은 사회서비스 사업은 여성 친화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는 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 어린이 방학문화예술교육, 저소득층 음악영재교육지원, 미술아카데미운영, 스포츠바우처, 생활체육강습교실 사업 등이 있음.

서울시는 2009년부터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시작하였음. 대상 모집단에 대해 성별 현황, 대상자수, 생활수준 등 현황 파악 및 스포츠와 관련된 성별 이슈 파악이 필요하며, 여자 청소년 참여율이 낮을 것에 대비해 이들을 위한 별도의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음.

2009년 성별 수혜자 현황을 파악하고, 수혜자가 특정 성(性)에 몰려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2010년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함. 그러나 2009년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사업 관련 성별 이슈를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음.

2. 사업별 성인지 예산서 적용 사례

서울시 성인지 예산서 작성안에 따라 실제 서울시 2008년 사업 사례를 적용함. 양성평등예산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였을 때, 사업 목록과 사업설명 자료가 중심이 됨. 사업 목록은 세부사업 단위로 기재하며, 세부사업별 사업설명 자료에는 사업목적 및 사업개요,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사업내용을 기재함.

복지국의 일반회계 항목들에 대해 양성평등예산사업에 관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면 <표 5-8>과 같음. 양성평등예산사업에는 사업목록과 사업 설명자료를 작성하는데, 목록에는 회계 분류와 세부사업명, 최근 2년간의 예산 및 당해년도의 예산요구액과 예산검토액을 기입하여 증감률을 표시함. 사업 설명자료는 세부사업별로 사업시행 부서와 정책, 단위와 같은 예산구조를 기입하고, 사업목적, 사업개요,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사업내용의 4가지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음.

<표 5-8> 서울시 사업별 성인지 예산서: 양성평등예산사업

Ⅰ. 양성평등예산사업

1. 목록

(단위 : 천원)

회계	세부사업	2007 예산	2008 예산(A)	2009 예산요구	2009 예산검토(B)	증감 (B-A)	%
일반회계	여성장애인프로그램 운영지원	600,000	600,000	600,000	600,000	0	0
일반회계	해산급여	0	262,500	262,500	262,500	0	
…	…	…	…	…	…	…	…
일반회계	아동복지센터운영및 아동보호전문기관확대		619,800	619,800	619,800	0	16,300

2. 사업 설명자료

1. 세부사업명: 여성장애인프로그램운영지원

부서(복지국 장애인복지과)-정책(장애인 자립생활기반 조성)-성과(장애인 취업지원 및 단체지원으로 사회참여기회 제공)-단위(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 사업목적: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고를 극복하여 여성장애인이 사회 일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함.

□ 사업개요: 서울등록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 중심기업협회(서울시지부)를 통해 장애인 취업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일반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확대

□ 사업내용: 장애인 직업능력과 희망하는 직종에 대한 통합적 정보를 제공하고 적합한 직업재활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일반교육 · 훈련기관의 장애인 이용방안 확대

2. 세부사업명: 해산급여

부서(복지국 장애인복지과)-정책(장애인 자립생활기반 조성)-성과(장애인 취업지원 및 단체지원으로 사회참여기회 제공)-단위(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 사업목적:

□ 사업개요: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사업내용:

여성장애인프로그램지원 사업의 경우, 부서는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이며 정책은 장애인 자립생활기반 조성, 성과는 장애인 취업지원 및 단체지원으로 사회참여기회 제공, 단위는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가 됨. 사업목적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고를 극복하여 여성장애인이 사회 일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사업개요는 서울등록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 중심기업협회(서울시지부)를 통해 장애인 취업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는 일반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확대가 되며, 사업내용은 장애인 직업능력과 희망하는 직종에 대한 통합적 정보를 제공하고 적합한 직업재활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일반교육·훈련기관의 장애인 이용방안 확대 등임.

하나의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목적, 사업개요,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사업내용에 대한 기입이 끝나면 다음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항목을 작성함.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기획예산처, 2008,「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김경희, 2003, "성인지적 예산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예산분석사례를 중심으로",「한국여성학회」, 제19권 1호, 5-41.

_____, 2006,「양성평등정책예산 제도화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김경희 · 윤정숙 · 하승수 · 박찬임, 2003,「성인지적 예산분석 지침 수립 방안연구」, 여성부.

김경희, 홍성만, 2002,「공무원 성(性) 인지적(認知的) 정책형성 교육안 개발」, 여성부.

김경희 외, 2003,「성인지적 예산분석 지침 수립방안 연구」, 여성부

김민정, 2003, "글로벌 거버넌스의 여성정책－유럽연합을 중심으로",「유럽연구」, 제18호, 239-268.

김영옥 외, 2007,「성인지 예산 분석기법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방안연구」.

_____, 2007, "해외의 성인지 예산 : 다양성과 정책적 선택", 여성정책연구원

마경희, 최진, 배유경, 2008,「해외의 성인지 예산 : 정부주도 3개국 심층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유경, 전기택, 2001,「성 인지적 통계자료 생산방안 : 행정부문」, 여성부.

박노욱, 나원영, 2008, "성인지 예산의 성과지표 개발 지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2000, "복지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지침".

윤영진, 이재인, 이재원, 김은정, 2008,「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체계와 실행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민우회, 2001,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심포지엄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각국의 성인지 예산서』.
_____, 2008,『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Ⅱ)－성인지 예산서 (안)의 시범작성 및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_____, 2007,『중기재정운용계획 및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성인지적 분석』.
_____, 2007,『해외의 성인지 예산 : 다양성과 정책적 선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http://www.moleg.go.kr/(법제처)
http://www.seoul.go.kr/(서울특별시)

영 문 요 약
(Abstract)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Gender Responsive Budget System in Seoul

Jun-Sik Bae · Kyung-Hee Shin · Se-Koo Rhee · Yoon-Hyi Jang

Gender equality and gender mainstreaming are recognized as a global common problem over the nation in spite of the difference of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between countries. Gender responsive policy intends to support the fair participation of both sexe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prevent unintended gender discrimination. In Korea, the gender responsive budgeting was introduced in 2006 according to the National Finance Act. According to the law, the government must submit the gender responsive budget bill as an attached document with the government budget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from the 2010 F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gender responsive budget to Seoul in order to spread the gender equality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Here, we study why Seoul should introduce the gender responsive budget and the administrative base of Seoul to practice this system. Also, we study the current budgetary process and how it should be changed for the implementation of gender responsive budget in Seoul. Seoul has a superb environment to introduce this system related to “Yeohang Project” which is the system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life of women. So, we need to graft the gender responsive budget on “Yeohang Project”.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e new budget system including the gender equality estimation, and to revise the law related to the local finance and the municipal ordinance in order to introduce the gender responsive budget system.

Table of Contents

Chapter I Introduction

1. Theoretical Background
2. Analysis Framework

Chapter II Concept and Current Issues of Gender Responsive Budget

1. Concept and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Responsive Budget
2. Current Issues of Gender Responsive Budget
3. Guidelines of Gender Responsive Budget in Central Government

Chapter III Environment and Limitation of Gender Responsive Budget in Seoul

1. System and Project Related to Gender Responsive Budget
2. Administrative Base of Gender Responsive Budget
3. Necessity and Expected Effect of Gender Responsive Budget

Chapter IV Introduction Plan of Gender Responsive Budget in Seoul

1. Basic Direction and Strategy
2. Implementation Plan by Stage

Chapter V Model of Gender Responsive Budget in Seoul

1. Form and Guideline of Gender Responsive Budget
2. Example of Gender Responsive Budget

References

Appendices

시정연 2009-PR-31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방안 연구

발 행 인 정 문 건

발 행 일 2009년 10월 31일

발 행 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1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값 5,000원 ISBN 978-89-8052-683-3 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